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COUR EUROPÉENNE DES DROITS DE L'HOMME  
유럽인권재판소

## 유럽인권협약 제18조에 대한 해설서

---

권리 제한의 한계

2023년 2월 28일 개정

이 해설서는 재판소 사무국이 작성했으며 유럽인권재판소에 대해 구속력을 지니지 않습니다.

이 문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쇄물 또는 전자 출판물의 형태로 번역 또는 복제하고자 하는 출판사나 단체는 [번역본 복제 또는 재출판 요청](#) 문의 양식을 작성하여 승인 절차에 관한 정보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판례 해설서가 어느 언어로 번역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는 경우 홈페이지에서 '[진행 중인 번역\(Pending translations\)](#)'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해설서는 원래 영어로 작성되었습니다. 이 해설서는 정기적으로 개정되며 가장 최근에는 2023년 2월 28일에 개정되었습니다. 이 해설서는 편집을 위해 수정될 수 있습니다.

판례 해설서는 <https://ks.echr.coe.int>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해설서 개정 관련 정보는 유럽인권재판소의 트위터 계정 [https://twitter.com/ECHR\\_CEDH](https://twitter.com/ECHR_CEDH)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번역물은 유럽평의회·유럽인권재판소의 동의를 받아 발간되었으며 이 번역물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번역본 발행처(한국 헌법재판소)에 있습니다.

## 목차

목차.....	3
일러두기 .....	5
I. 서문 .....	6
II. 적용 범위.....	8
A. 제 18 조의 부수적 성격.....	8
B. 제 18 조의 적용가능성.....	8
C. 실제적 조항과 결합된 제 18 조 적용례.....	9
D. 협약의 기타 조항에 따라 검토한 이면의 목적 주장 .....	11
E. 제 18 조를 적용하는 경우.....	12
III. 제한의 목적 .....	14
A. “이면의 목적” 개념.....	14
B. 방법론 및 일반 원칙.....	15
1. 단일 목적 및 복수 목적.....	15
2. “주된 목적” 개념.....	16
3. 주장된 이면의 목적의 성격 및 비난 가능성의 정도.....	16
4. 지속 상황.....	17
5. 반복 제한 및 권력 오용 양상.....	17
6. 복수의 이면의 목적 주장.....	18
C. 오로지 이면의 목적에 근거한 제한 .....	18
1. 확립된 권력 남용 양상과 무관한 사건.....	18
2. 특정 개인 표적화 암시 양상.....	19
3. 특정 집단 표적 권력 남용 양상 .....	20
D. 복수의 목적을 추구하는 제한.....	23
1. 확립된 권력 남용 양상과 무관한 사건.....	23
2. 특정 집단 표적 권력 남용 양상 .....	24
3. 주된 목적이 아닌 이면의 목적.....	25
IV. 증거 및 증명 문제 .....	25
A. 일반적인 증거 기준 .....	25
B. 미결구금 및 형사 기소 특별 사안 .....	28
C. 정치적 목적 주장.....	28
D. 제 18 조 위반 판단 증거.....	32
1. 직접 증거.....	32
2. 정황 증거.....	32
a. 확립된 권력 남용 양상과 무관한 사건 .....	32
b. 특정 개인 표적화 암시 양상.....	35
c. 특정 집단 표적 권력 남용 양상 .....	36
E. 증명되지 않은 청구 .....	38

인용 판례 목록..... 43

## 일러두기

이 해설서는 유럽인권재판소(이하 “재판소”, “유럽재판소” 또는 “스트라스부르 재판소”)가 선고한 주요 판결과 결정에 관한 정보를 법실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재판소가 발간하고 있는 유럽인권협약해설서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그 시리즈 중 이 해설서는 유럽인권협약(이하 “협약” 또는 “유럽협약”) 제18조에 관한 판례법을 분석하고 요약한 것입니다. 독자들은 이 해설서를 통해 이 분야의 주요 원칙들과 관련 판례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용된 판례는 리딩케이스이거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그리고 최근의 판결과 결정들 중에서 선별한 것입니다.\*

재판소는 판결과 결정을 통해 제소된 개별사건에 대해 판단할 뿐만 아니라, 보다 일반적으로 협약상의 원칙을 명확히 밝히고 보장하여 발전시킴으로써, 각국이 협약당사국으로서의 이행사항을 준수하도록 합니다(*Ireland v. the United Kingdom*, 1978, § 154, 1978년 1월 18일, Series A no. 25, 더 최근의 사건으로는, *Jeronovičs v. Latvia* [GC], no. 44898/10, § 109, 2016년 7월 5일).

유럽인권협약 체제를 설립한 목적은 이처럼 공동의 이익에 관련된 공공정책의 문제들을 판단함으로써, 협약당사국들 전체의 인권보호 수준을 높이고 인권법제를 확충하는 것입니다(*Konstantin Markin v. Russia* [GC], § 89, no. 30078/06, ECHR 2012). 실제로, 재판소는 유럽인권협약이 인권 분야에서 “유럽의 공공질서에 대한 헌법적 문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강조해 왔습니다(*Bosphorus Hava Yolları Turizm ve Ticaret Anonim Şirketi v. Ireland* [GC], no. 45036/98, § 156, ECHR 2005-VI, 더 최근의 사건으로는, *N.D. and N.T. v. Spain* [GC], nos. 8675/15 및 8697/15, § 110, 2020년 2월 13일).

최근 유럽인권협약 제15의정서는 협약 전문에 보충성의 원칙을 추가하였습니다. 이 원칙은 인권보호와 관련하여 “당사국과 재판소 간에 공동의 책임을 부과”하며, 국가 당국과 법원은 유럽인권협약과 그 의정서에 정의된 권리와 자유에 완전한 효력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국내법을 해석하고 적용해야 합니다(*Grzęda v. Poland* [GC], § 324).

이 해설서는 협약의 해당 조항과 그에 관한 추가 의정서 조항들에 대해 주제어들을 표시해 두고 있습니다. 각 사건에서 다루진 법적 쟁점은 유럽인권협약과 그 의정서 본문에서 (대부분의 경우) 그대로 추출한 색인으로부터 선별한 주제어목록(*List of keywords*)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유럽인권재판소 판례가 수록된 HUDOC 데이터베이스(*HUDOC database*)는 주제어를 통한 검색을 지원합니다. 이러한 주제어검색을 이용하면 유사한 법적 쟁점을 포함하고 있는 판례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해당 사건에서의 논증과 결론이 주제어를 통해 요약되어 있음). 개별 사건의 주제어는 HUDOC에서 사건세부정보(Case Details) 태그를 클릭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UDOC 데이터베이스 및 주제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UDOC 사용자 설명서(*HUDOC user manual*)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인용된 판례는 재판소와 유럽인권위원회(European Commission of Human Rights)의 공식 언어(영어 및 프랑스어) 중 하나 또는 두 언어 모두로 작성되었을 수 있습니다. 특별한 표시가 없는 한, 모든 인용문은 소재판부(Chamber)가 선고한 본안판결(judgment on the merits)에 대한 것입니다. 약칭 “(dec.)”은 재판소의 결정(decision)에서 인용하는 것을 의미하고, “[GC]”는 해당 사건이 대재판부(Grand Chamber)에서 심리된 것임을 나타냅니다. 재판부의 판단이 있지만 이 개정판 발간 당시 최종적인 것이 아닌 때에는 별표(\*)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 I. 서문

### 협약 제18조 – 권리 제한의 한계

“전술한 권리와 자유에 대하여 [본] 협약에 따라 허용되는 제한은 이를 규정한 목적 이외의 어떠한 목적을 위하여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 HUDOC 주제어

허가되지 않은 목적에 대한 제한(18)

1. 협약 제18조의 대상과 목적은 권력 남용 금지이다(*Merabishvili v. Georgia* [GC], 2017, §§ 303 및 306; *Ilgar Mammadov v. Azerbaijan* (침해 소송) [GC], 2019, § 189; *Kavala v. Türkiye* (침해 소송) [GC], 2022, § 144).
2. 협약 준비문서에 따르면, 협약은 “권력 오용 이론의 적용”을 제시한다(CDH (75) 11, p. 8). 이는 국가가 “자국 영토에서 이러한 자유의 행사를 체계화하거나 법조문 보호를 구실로 만들었지만 그 반대의 효과를 내는 사소한 조치를 수단으로 삼아” 협약의 권리와 자유를 억압하지 못하게 막는다(*ibid.*, p. 3).
3. 제18조는 협약에 명시된 권리와 자유의 제한을 규정하는 조항을 보완한다. “... 이외의 어떠한 목적을 위하여도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문구는 예를 들어 제5조제1항 두 번째 문장 및 제8조부터 제11조 중 각 두 번째 항 같은 조항의 문구와 거의 일치한다(*Merabishvili v. Georgia* [GC], 2017, §§ 287 및 293). 그러나 제18조는 단순히 제한 조항의 범위를 명확히 밝히는 역할만 하는 것은 아니다. 이 조항은 유럽인권협약 당사국이 협약 자체에 규정되지 않은 목적으로 협약에 정식으로 기술된 권리와 자유의 제한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며, 이러한 제한은 독자적으로 이루어진다(*ibid.*, § 288; *Mammadli v. Azerbaijan*, 2018, § 93; *Rashad Hasanov and Others v. Azerbaijan*, 2018, § 116; *Navalnyy v. Russia* [GC], 2018, § 164; 및 *Korban v. Ukraine*, 2019, § 209; *Selahattin Demirtaş v. Turkey (no. 2)* [GC], 2020, § 421; *Ahmet Hüsrev Altan v. Turkey*, 2021, § 234; *Miroslava Todorova v. Bulgaria*, 2021, § 192; *Juszczyszyn v. Poland*, 2022, § 307).
4. 제18조는 독자적 기능할 뿐만 아니라 재판소가 다음과 같은 협약 또는 그 의정서의 다른 조항에 포함된 제한 규정 해석을 보조한다(*Merabishvili v. Georgia* [GC], 2017, § 269)
  - 협약 제 5 조제 1 항: *Winterwerp v. the Netherlands*, 1979, § 39; *Guzzardi v. Italy*, 1980, § 102; *Ashingdane v. the United Kingdom*, 1985, § 44; *Weeks v. the United Kingdom*, 1987, § 42; *Kafkaris v. Cyprus* [GC], 2008, § 117; *Kucheruk v. Ukraine*, 2007, § 177
  - 협약 제 8 조제 2 항: *De Wilde, Ooms and Versyp v. Belgium*, 1971, § 93; *Gillow v. the United Kingdom*, 1986, § 54
  - 협약 제 10 조제 2 항: *Lingens v. Austria*, 1986, § 36
  - 협약 제 11 조제 2 항: *The United Macedonian Organisation Ilinden – PIRIN and Others v. Bulgaria (no. 2)*, 2011, § 83
  - 협약 제 15 조: *Lawless v. Ireland (no. 3)*, 1961, “the Law” 부분 § 38
  - 제 1 의정서 제 1 조: *Beyeler v. Italy* [GC], 2000, § 111
5. 제18조는 행사되는 경우가 드물고, 해당 조항의 위반은 차치하고서라도 제18조에 따른 제소를 재판소가 심리적격이라고 선언한 경우도 거의 없다(*Khodorkovskiy and Lebedev*

*v. Russia*, 2013, § 898). 제18조에 따른 재판소 판례를 종합적으로 살펴본 경우는 *Merabishvili v. Georgia* [GC], 2017 사건에서 확인할 수 있다(§§ 264–281).

6. 제18조에 따른 판례의 희소성을 고려하여 재판소는 부적절한 동기가 의심되는 사건을 결정할 때 더욱 주의를 기울인다(*Khodorkovskiy and Lebedev v. Russia*, 2013, § 898).

7. 재판소는 제34조(개별 신청) 및 제35조(심리적격 기준)에 명시된 심사 기준과 판례에 확립된 규칙에 따라 제소의 심리적격을 검토한다(심리적격 기준 실무해설서 참조; 또한, 다양한 예시 중, *Merabishvili v. Georgia* [GC], 2017, §§ 247–251; *Denisov v. Ukraine* [GC], 2018, § 136; *Rustavi 2 Broadcasting Company Ltd and Others v. Georgia*, 2019, §§ 269, 274 and 318; *Khodorkovskiy and Lebedev v. Russia (no. 2)*, 2020, § 621; *Kavala v. Turkey*, 2019, § 201; *Ibrahimov and Mammadov v. Azerbaijan*, 2020, § 144; *Rustamzade v. Azerbaijan*, 2019, § 58; 및 *Savalanli and Others v. Azerbaijan*, 2022, § 107 참조). 재판소는 정부의 구체적인 선결적 항변이 부재할 때에도 해당 소송의 심리적격을 검토한다(*Korban v. Ukraine*, 2019, §§ 204–205; *Aliyev v. Azerbaijan*, 2018, § 191; *Natig Jafarov v. Azerbaijan*, 2019, § 57; *Khadija Ismayilova v. Azerbaijan (no. 2)*, 2020, § 106; 및 *Yunusova and Yunusov v. Azerbaijan (no. 2)*, 2020, § 180; *Ahmet Hüsrev Altan v. Turkey*, 2021, § 229; *Mirgadirov v. Azerbaijan and Turkey*, 2020, § 127; *Azizov and Novruzlu v. Azerbaijan*, 2021, § 64).

8. 재판소는 제18조 위반이라고 판단하면 이어서 제46조에 따라 지시를 내린다(*Aliyev v. Azerbaijan*, 2018, §§ 223–228; *Navalnyy v. Russia* [GC], 2018, §§ 185–186; *Selahattin Demirtaş v. Turkey (no. 2)* [GC], 2020, § 441–442; *Kavala v. Turkey*, 2019, § 240; *Yuksekdag Senoglu and Others v. Türkiye*, 2022, § 655; 자세한 사항은 [협약 제46조에 대한 해설서](#) 참조).

9. *Ilgar Mammadov v. Azerbaijan* (침해 소송) [GC], 2019 사건은 재판소가 *Ilgar Mammadov v. Azerbaijan*, 2014 사건에서 제5조와 결합된 제18조 위반으로 판단하고 이어서 국가가 책임질 의무사항을 결정하였다.

10. *Kavala v. Türkiye* (침해 소송) [GC], 2022 사건에서 재판소는 제46조에 따른 명시적인 지시사항에 따라 해야 할 일을 분명히 정리하면서 재판소가 위반으로 판단하면 이러한 일의 성격상 시정에 필요한 수단은 별다른 선택 과정이 필요 없을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소가 제5조제1항에 따라 명백히 부당하다고 판단한 구금 관련 사건인 경우, 자유와 안전에 대한 기본권의 중요성 때문에 시급히 끝내야 하는 위반이라는 점에서 이런 사실이 잘 드러난다. 이러한 파악은 위반이 제18조에 반하는 구금에서 비롯되는 경우 더욱 타당하다. 결과적으로, 제46조에 따른 지시사항(예: 구금된 청구인을 즉각 석방하라는 지시)을 내리면 우선 재판소가 판결을 선고하는 즉시, 협약이 제공하는 보호가 유효하다는 것을 보장하고, 쟁점이 된 권리의 지속적인 침해를 방지할 수 있게 하며, 이어서 최종 판결 집행에 대한 각료위원회의 통제를 보조할 수 있다. 이러한 지시사항은 또한 관련 국가가 재판소가 판단한 협약 위반을 가능한 빨리 끝낼 수 있게 하고, 가능한 빨리 끝낼 것을 요구한다(§§ 147–148).

11. 재판소가 제18조 위반으로 판단한 판결의 집행 통제 관련 각료위원회의 관행은 그 개요가 *Ilgar Mammadov v. Azerbaijan* (침해 소송) [GC], 2019 사건에 요약되어 있다.

## II. 적용 범위

### A. 제18조의 부수적 성격

12. 제14조와 유사하게 협약 제18조는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유럽인권협약 당사국이 관할권 하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장할 의무를 진 권리와 자유를 명시하거나 자격을 부여하는 협약 또는 그 의정서의 다른 조항과 결합하여 적용될 수 있을 뿐이다(*Kamma v. the Netherlands*, 위원회 보고서, 1974, p. 9; *Gusinskiy v. Russia*, § 73; *Cebotari v. Moldova*, 2007, § 49; *Khodorkovskiy v. Russia*, 2011, § 254; *AO Neftyanaya Kompaniya Yukos v. Russia*, 2011, § 663; *Lutsenko v. Ukraine*, 2012, § 105; *Tymoshenko v. Ukraine*, 2013, § 294; *Ilgar Mammadov v. Azerbaijan*, 2014, § 137; *Rasul Jafarov v. Azerbaijan*, 2016, § 153; *Tchankotadze v. Georgia*, 2016, § 113; *Mammadli v. Azerbaijan*, 2018, § 93; *Rashad Hasanov and Others v. Azerbaijan*, 2018, § 116; *Aliyev v. Azerbaijan*, 2018, § 198; *Navalnyy v. Russia* [GC], 2018, § 164; *Navalnyy v. Russia (no. 2)*, 2019, § 84; *Selahattin Demirtaş v. Turkey (no. 2)* [GC], 2020, § 421; *Miroslava Todorova v. Bulgaria*, 2021, § 191; *Juszczyszyn v. Poland*, 2022, § 306).

13. 이러한 부수적 성격을 고려할 때 협약의 특정 실체적 조항과 결합하여 제기된 제18조에 따른 청구서는 해당 실체적 조항에 단독으로 의거한 청구서 제출과 동일한 기한 내에 제출되어야 한다(*Avraamova v. Ukraine*, 2022, § 105).

14. 제14조와 마찬가지로 제18조가 결합되어 적용되는 조항의 위반이 없더라도 제18조의 위반은 있을 수 있다(*Merabishvili v. Georgia* [GC], 2017, § 288; 또한 *Kamma v. the Netherlands*, 위원회 보고서, 1974, p. 9; *Gusinskiy v. Russia*, 2004, § 73; *Cebotari v. Moldova*, 2007, § 49; *Aliyev v. Azerbaijan*, 2018, § 198; *Navalnyy v. Russia* [GC], 2018, § 164; *Selahattin Demirtaş v. Turkey (no. 2)* [GC], 2020, § 421; *Miroslava Todorova v. Bulgaria*, 2021, § 192; *Juszczyszyn v. Poland*, 2022, § 307 참조).

### B. 제18조의 적용가능성

15. 제18조가 협약 또는 그 의정서의 다른 실체적 조항과 결합하여 적용할 수 있으려면 해당 실체적 조항에 따른 권리에 제한이 가해져야 한다(*Josephides v. Turkey* (dec.), 1999, § 4; *Akhalaia v. Georgia* (dec.), 2022, § 67). 관련된 실체적 조항에 따라 논쟁할 쟁점이 없거나 청구인의 권리를 제한하지 않았다면 제18조에 의거할 수 없다(*Rustavi 2 Broadcasting Company Ltd and Others v. Georgia*, 2019, §§ 316–317; *Akhalaia v. Georgia* (dec.), 2022, §§ 67–68; *Juszczyszyn v. Poland*, 2022, §§ 284–286 비교).

16. 제18조 위반은 침해된 권리 또는 자유가 협약에 따라 제한이 허용되는 경우(*Kamma v. the Netherlands*, 위원회 보고서, 1974, p. 9; *Oates v. Poland* (dec.), 2000; *Gusinskiy v. Russia*, 2004, § 73), 즉 상대적 권리인 경우에만 발생할 수 있다(*Merabishvili v. Georgia* [GC], 2017, §§ 265, 271 및 290; *Mammadli v. Azerbaijan*, 2018, § 93; *Rashad Hasanov and Others v. Azerbaijan*, 2018, § 116; *Navalnyy v. Russia* [GC], 2018, § 164; *Navalnyy v. Russia (no. 2)*, 2019, § 84; *Khodorkovskiy and Lebedev v. Russia (no. 2)*, 2020, § 620; *Selahattin Demirtaş v. Turkey (no. 2)* [GC], 2020, § 421; *Democracy and Human Rights Resource Centre and Mustafayev v. Azerbaijan*, 2021, § 98; *Miroslava Todorova v. Bulgaria*, 2021, § 193; *Juszczyszyn v. Poland*, 2022, § 308).

17. 따라서 절대적 권리와 결합된 제18조에 따른 제소는 협약의 물적 관할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Timurtaş v. Turkey*, 위원회 보고서, 1998, § 329; *Tretiak v. Ukraine* [위원회], 2020, §§ 66–68).

18. 제18조를 절차적 보호에 적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재판소는 제5조제3항(합리적인 기간 내에 재판을 받거나 재판 중에 석방될 권리)과 결합된 본 조항의 위반 혐의를 검토하였다(*Azizov and Novruzlu v. Azerbaijan*, 2021, § 80).

19. 협약 제6조 및 제7조에 협약 제18조에 따른 재판소의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제한이 포함되어 있느냐는 질문은 아직 답을 찾지 못하였다(*Ilgar Mammadov v. Azerbaijan (no. 2)*, 2017, § 261). 예를 들어, 다음을 비교.

- *Navalnyy and Ofitserov v. Russia*, 2016 (§ 129) 및 *Navalnyy v. Russia*, 2017 (§ 88) 사건에서 재판소는 이 사건과 관련된 상황에서 제 6 조 및 제 7 조와 결합하여 해석한 제 18 조에 따른 청구에 대해 이 조항들은 해당 사건에 관한 한 어떠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제한도 포함하지 않으므로 물적 관할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
- *Nastase v. Romania* (dec.), 2014 (§§ 105–109) 사건에서 재판소는 제 6 조와 결합하여 해석한 제 18 조에 따른 청구를 근거가 없음이 명백하여 각하
- *Khodorkovskiy v. Russia (no. 2)* (dec.), 2011 (§ 16) 및 *Lebedev v. Russia (no. 2)* (dec.), 2010 (§§ 310–314) 사건에서 재판소는 제 5 조, 제 6 조, 제 7 조 및 제 8 조와 결합하여 해석한 제 18 조에 따른 청구인들의 제소를 심리적격으로 선언하고 이어서 *Khodorkovskiy and Lebedev v. Russia*, 2013, §§ 897–909 사건의 판결에서 해당 청구의 본안을 검토한 후 제 18 조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 재판소는 후자의 판결을 참조하여 다른 유코스(Yukos) 주주가 제기한 제 6 조와 결합된 제 18 조에 따른 청구는 근거가 없음이 명백하여 기각(*Nevzlin v. Russia*, 2022, §§ 124–125)
- *Ilgar Mammadov v. Azerbaijan* (침해 소송) [GC], 2019 (§§ 189 및 208) 및 *Kavala v. Türkiye* (침해 소송) [GC], 2022 (§§ 145–146 및 151) 사건에서 재판소는 각각의 최초 판결에서 제 5 조와 결합된 제 18 조의 위반을 발견하게 되자(*Ilgar Mammadov v. Azerbaijan*, 2014 및 *Kavala v. Turkey*, 2019) 청구인들의 유죄 판결 및 실행 선고를 포함하여 학대 범죄 혐의를 추적한 결과로 이룬 이후의 모든 조치가 무효화되었다고 판단
- *Saakashvili v. Georgia* (dec.), 2022 사건에서 재판소는 제 6 조 및 제 7 조와 결합된 제 18 조의 적용가능성 문제를 본안에 통합(§§ 60–61)

## C. 실체적 조항과 결합된 제18조 적용례

20. 협약 기구는 아래 나열된 조항과 함께 제18조에 따른 청구를 검토하였다.

- 협약 제 5 조: *Gusinskiy v. Russia*, 2004, § 78; *Cebotari v. Moldova*, 2007, § 53; *Khodorkovskiy v. Russia*, 2011, § 254; *Lutsenko v. Ukraine*, 2012, § 110; *Dochnal v. Poland*, 2012, § 114; *Tymoshenko v. Ukraine*, 2013, § 301; *Ilgar Mammadov v. Azerbaijan*, 2014, § 144; *Rasul Jafarov v. Azerbaijan*, 2016, § 163; *Tchankotadze v. Georgia*, 2016, § 110; *Merabishvili v. Georgia* [GC], 2017, §§ 318–354; *Ramishvili and Kokhreidze v. Georgia* (dec.), 2007; *Mammadli v. Azerbaijan*, 2018, § 105; *Rashad Hasanov and Others v. Azerbaijan*, 2018, § 127; *Aliyev v. Azerbaijan*, 2018, § 216; *Navalnyy v. Russia* [GC], 2018, § 176; *Navalnyy v. Russia (no. 2)*, 2019, § 86; *Korban v. Ukraine*, 2019, § 225; *Batiashvili v. Georgia*, 2019, § 103; *Kavala v. Turkey*, 2019, § 232; *Natig Jafarov v. Azerbaijan*, 2019, § 71; *Ibrahimov and Mammadov v. Azerbaijan*, 2020, § 158; *Khadija Ismayilova v. Azerbaijan (no. 2)*, 2020, § 119; 및 *Yunusova and Yunusov v. Azerbaijan (no. 2)*, 2020, § 195; *Selahattin Demirtaş v. Turkey (no. 2)* [GC],

- 2020, § 402; *Sabuncu and Others v. Turkey*, 2020, § 235; *Şık v. Turkey (no. 2)*, 2020, § 194; *Ahmet Hüsrev Altan v. Turkey*, 2021, § 228; *Mirgadirov v. Azerbaijan and Turkey*, 2020, § 135; *Yuksekdag Senoglu and Others v. Türkiye*, 2022, § 640; *Kutayev v. Russia*, 2023, § 142; *Ugulava v. Georgia*, 2023, § 131)
- 협약 제 5 조제 3 항 끝부분(*Azizov and Novruzlu v. Azerbaijan*, 2021, § 80)
  - 협약 제 6 조: *Nastase v. Romania* (dec.), 2014, §§ 105–109; *Khodorkovskiy v. Russia (no. 2)* (dec.), 2011, § 16; 및 *Lebedev v. Russia (no. 2)* (dec.), 2010, §§ 310–314
  - 협약 제 8 조: *Bîrsan v. Romania* (dec.), 2016, § 73; *Khodorkovskiy v. Russia (no. 2)* (dec.), 2011, § 16; *Lebedev v. Russia (no. 2)* (dec.), 2010, §§ 310–314; *Aliyev v. Azerbaijan*, 2018, § 216; *Khodorkovskiy and Lebedev v. Russia (no. 2)*, 2020, §§ 624–626); *Ovcharenko and Kolos v. Ukraine*, 2023, § 136; *Juszczyszyn v. Poland*, 2022, § 338
  - 협약 제 9 조: *C.R. v. Switzerland* (dec.), 1999
  - 협약 제 10 조: *Şener v. Turkey*, 2000, §§ 59–62; *Sabuncu and Others v. Turkey*, 2020, § 235; *Şık v. Turkey (no. 2)*, 2020, § 194; *Miroslava Todorova v. Bulgaria*, 2021, § 214
  - 협약 제 11 조: *Navalnyy v. Russia* [GC], 2018, § 176
  - 제 1 의정서 제 1 조: *Isik v. Turkey*, 위원회 결정, 1995; *OAQ Neftyanaya Kompaniya Yukos v. Russia*, 2011, §§ 663–666; *Bîrsan v. Romania* (dec.), 2016, § 73; *Rustavi 2 Broadcasting Company Ltd and Others v. Georgia*, 2019, §§ 316–317; *Democracy and Human Rights Resource Centre and Mustafayev v. Azerbaijan*, 2021, §§ 97–98
  - 제 4 의정서 제 2 조: *Democracy and Human Rights Resource Centre and Mustafayev v. Azerbaijan*, 2021, §§ 97–98

21. 피청구국 정부가 청구인이 의거하는 실체적 조항 중 하나와 결합된 제18조에 따른 제소 통지를 받지 못하였고 이와 관련, 당사자들에게 어떤 구체적인 질문도 제기되지 않은 경우, 재판소는 해당 실체적 조항과 결합된 제18조에 따른 제소를 검토하지 않을 것이다. 재판소는 피청구국 정부에 해당 사건을 전달할 때 통지된 실체적 조항과 결합된 경우에만 제18조에 따른 제소를 검토할 것이다(*Selahattin Demirtaş v. Turkey (no. 2)* [GC], 2020, § 402; *Yuksekdag Senoglu and Others v. Türkiye*, 2022, § 623).

22. 재판소는 특정 실체적 조항과 결합된 제18조에 따른 제소를 검토한 적이 없으며, 이 경우 ‘별도로 접수된’ 해당 실체적 조항에 따른 제소는 절차적 사유로 각하를 선언하였다. 예를 들어, *Azizov and Novruzlu v. Azerbaijan*, 2021 사건에서 청구인들이 제5조제1항 단독으로 제소하자(청구인들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부재한 가운데 구금됨) 국내 구제 절차를 완료하지 않았다고 거절하였다. 재판소는 청구인들의 구금이 제5조제1항제(c)호에 규정된 정당한 목적을 추구했느냐는 질문을 ‘제18조 하에 별도로’ 검토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오히려 제5조제3항과 결합된 제18조를 검토하였으며 제5조제3항에 따른 제소는 별도로 접수되어 심리적격으로 선언되었다(*Azizov and Novruzlu v. Azerbaijan*, 2021, §§ 68 및 70).

23. 제5조 이외의 실체적 조항에 따른 청구인의 권리 제한이 구금 명령의 일부로 부과되어 이와 분리할 수 없는 경우, 재판소는 제5조만 단독으로 결합된 제18조에 따른 청구 검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Navalnyy v. Russia (no. 2)*, 2019, § 86).

24. 재판소는 지금까지 다음 조항과 결합된 제18조 위반을 판단하였다.

- 제 5 조(*Gusinskiy v. Russia*, 2004; *Cebotari v. Moldova*, 2007; *Lutsenko v. Ukraine*, 2012; *Tymoshenko v. Ukraine*, 2013; *Ilgar Mammadov v. Azerbaijan*, 2014; *Rasul Jafarov v. Azerbaijan*, 2016; *Merabishvili v. Georgia* [GC], 2017; *Mammadli v. Azerbaijan*, 2018; *Rashad Hasanov and Others v. Azerbaijan*, 2018, *Aliyev v. Azerbaijan*, 2018; *Navalnyy v. Russia* [GC], § 176; *Navalnyy v. Russia (no. 2)*, 2019, § 99; *Natig Jafarov v. Azerbaijan*, 2019, § 71; *Kavala v. Turkey*, 2019, § 232; *Ibrahimov and Mammadov v. Azerbaijan*, 2020, § 158; *Khadija Ismayilova v. Azerbaijan (no. 2)*, 2020, § 120; *Yunusova and Yunusov v. Azerbaijan (no. 2)*, 2020, § 195; *Selahattin Demirtaş v. Turkey (no. 2)* [GC], 2020, § 438; *Yuksekdag Senoglu and Others v. Türkiye*, 2022, § 640; *Kutayev v. Russia*, 2023, § 142)
- 제 5 조제 3 항 끝부분: *Azizov and Novruzlu v. Azerbaijan*, 2021, § 80
- 제 8 조(*Aliyev v. Azerbaijan*, 2018; *Juszczyszyn v. Poland*, 2022, § 338)
- 제 10 조(*Miroslava Todorova v. Bulgaria*, 2021, § 214)
- 제 11 조(*Navalnyy v. Russia* [GC], 2018, § 176)
- 제 1 의정서 제 1 조: *Democracy and Human Rights Resource Centre and Mustafayev v. Azerbaijan*, 2021, § 111
- 제 4 의정서 제 2 조: *Democracy and Human Rights Resource Centre and Mustafayev v. Azerbaijan*, 2021, § 111

## D. 협약의 기타 조항에 따라 검토한 이면의 목적 주장

25. 협약 권리 제한의 기저에 깔린 부적절한 동기 또는 이면의 목적에 대한 주장이 협약의 실제적 조항 하에 제기되고 검토되기도 한다.

- 제 5 조제 1 항: 전후관계상 자유 박탈이 주로 이면의 목적을 위한 것임을 보여주는 명백한 불규칙성이 있는 경우, 재판소는 자유를 박탈할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제 5 조제 1 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한다. 해당하는 사건은 다음과 같다.
  - 청구인이 모호하거나 조작된 혐의로 구금되었거나, 집회 참여 저지 또는 집회 참여에 대한 처벌로 구금이 연장된 경우(*Shimovolos v. Russia*, 2011, §§ 52–57; *Hakobyan and Others v. Armenia*, 2012, § 123; *Nemtsov v. Russia*, 2014, § 103; *Gafgaz Mammadov v. Azerbaijan*, 2015, §§ 107–108; *Kasparov v. Russia*, 2016, §§ 50–56; *Huseynli and Others v. Azerbaijan*, 2016, §§ 146–147; *Ibrahimov and Others v. Azerbaijan*, 2016, §§ 126–127; *Navalnyy and Yashin v. Russia*, 2014, §§ 92–95)
  - 당국이 국내법이 요구하는 구금에 대한 사법적 허가를 지연시키거나(*Oleksiy Mykhaylovych Zakharkin v. Ukraine*, 2010, §§ 86–88), 위장 범죄인 인도를 진행하기 위해 절차를 조작한 경우(*Bozano v. France*, 1986, §§ 59–60; *Nowak v. Ukraine*, 2011, § 58; *Azimov v. Russia*, 2013, §§ 163 및 165; *Eshonkulov v. Russia*, 2015, § 65)
  - 청구인이 불법 납치되어 타국에 투항한 경우(*Iskandarov v. Russia*, 2010, §§ 109–115 및 148–151)
  - 당국이 망명 신청자를 체포한 후 추방할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망명 신청자의 신뢰를 얻기 위해 소환 후 망명 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경우(*Čonka v. Belgium*, 2002, § 41)

- 타국 시민을 일괄 추방하여 보복할 목적으로 무차별 체포한 경우(*Georgia v. Russia (I)*) [GC], 2014, §§ 185–186)
- 청구인이 형제의 형사 소송에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체포 및 구금된 경우(*Giorgi Nikolaishvili v. Georgia*, 2009, § 57)
- 수사관의 진짜 의도는 청구인을 피고로 기소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구금 절차 장소를 보다 편리한 곳으로 변경하기 위해 청구인이 증인으로 구금된 경우(*Khodorkovskiy v. Russia*, 2011, § 142)
- 제 6 조: *Jordan v. the United Kingdom*, 2004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한 형사 소송이 특히 청구인이 정치적, 사회적, 개인적 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등을 조건으로 걸고 건강상의 이유로 유예된 것은 청구인이 사실은 건강 상태와 무관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음을 실증하는 것이었다. 재판소는 이러한 조건이 형사 고소를 취하하는 “대가”로 정치 활동을 금지한 사례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였다. *Nikëhasani v. Albania*, 2022 사건에서, 재판소는 재정 상태의 타당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어 해임된 검사의 다양한 청구를 자격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검토하였다. 법원은 특히 자격심사 절차가 수행된 방식이 실은 남편의 정치적 견해 또는 활동을 이유로 자신을 박해하려는 이면의 목적을 추구했다는 주장을 기각하였다(§ 77).
- 제 10 조: *NIT S.R.L. v. the Republic of Moldova* [GC], 2022 사건에서 재판소는 특히 정치적 다원주의의 법적 요건을 위반한 텔레비전 채널의 방송 면허 취소가 정부에 대한 비판적 견해 표현을 방해하기 위한 것인지 또는 다른 이면의 목적을 추구했는지 등을 조사하였다(§ 222).
- 제 11 조: *The United Macedonian Organisation Ilinden – PIRIN and Others v. Bulgaria (no. 2)*, 2011 사건에서 재판소는 청구정당 등록 거부와 청구정당이 지지하는 견해나 정책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려는 것인지 검토하였다(§§ 85–89).
- 제 11 조와 결합된 제 14 조: *Bączkowski and Others v. Poland*, 2007 사건에서 재판소는 동성애 혐오에 반대하는 항의 행진을 허용하지 않은 것이 시장이 공개적으로 표명한 동성애 혐오 의견의 영향을 받은 것인지 검토하였다(§§ 97 및 100).

## E. 제18조를 적용하는 경우

26. 협약 권리 또는 자유의 제한이 이를 허용하는 조항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반드시 제18조에 따라 사안이 제기되는 것은 아니다. 협약에 규정되지 않은 목적을 위해 제한이 적용되었다는 주장이 사건의 근본적인 측면으로 보이는 경우에만 해당 조항에 따른 청구에 대한 별도의 심사가 정당화된다(*Merabishvili v. Georgia* [GC], 2017, § 291; *Selahattin Demirtaş v. Turkey (no. 2)* [GC], 2020, § 421; *Mammadli v. Azerbaijan*, 2018, § 97; *Rashad Hasanov and Others v. Azerbaijan*, 2018, § 120; *Aliyev v. Azerbaijan*, 2018, § 199; *Navalnyy v. Russia* [GC], 2018, § 164; *Navalnyy v. Russia (no. 2)*, 2019, § 92; *Kavala v. Turkey*, 2019, § 198; *Natig Jafarov v. Azerbaijan*, 2019, § 63; *Ibrahimov and Mammadov v. Azerbaijan*, 2020, § 150; *Khadija Ismayilova v. Azerbaijan (no. 2)*, 2020, § 112; *Yunusova and Yunusov v. Azerbaijan (no. 2)*, 2020, § 186; *Sabuncu and Others v. Turkey*, 2020, § 252; *Şık v. Turkey (no. 2)*, 2020, § 211; *Ahmet Hüsrev Altan v. Turkey*, 2021, § 234; *Azizov and Novruzlu v. Azerbaijan*, 2021, § 68; *Miroslava Todorova v. Bulgaria*, 2021, §§ 194, 203; *Juszczyszyn v. Poland*, 2022, § 309).

27. 제18조에 따른 당사자들의 제출물이 협약의 관련 실체적 조항에 따른 청구인의 권리 침해 혐의에 관한 당사자들의 주장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경우, 재판소는 제18조에 따른 청구가 사건의 근본적인 측면을 나타낸다고 결론 내릴 근거가 없다(*Razvozhayev v. Russia*

*and Ukraine and Udaltsov v. Russia*, 2019, § 305). 따라서 제18조에 따른 청구를 분석하기에 앞서 재판소는 먼저 청구의 핵심이 관련 실체적 조항에 따라 이미 검토되었는지 확인한다(*Korban v. Ukraine*, 2019, § 204; *Khodorkovskiy and Lebedev v. Russia (no. 2)*, 2020, § 622; *Selahattin Demirtaş v. Turkey (no. 2)* [GC], 2020, § 401; *Democracy and Human Rights Resource Centre and Mustafayev v. Azerbaijan*, 2021, § 103; *Juszczyszyn v. Poland*, 2022, § 317). 이 경우 재판소는 일반적으로 제18조에 따른 청구가 별도의 사안을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Navalnyy and Gunko v. Russia*, 2020, §§ 96–98; *Staykov v. Bulgaria*, 2021, §§ 120–121). 재판소는 또한 청구인이 같고 사건이 다른 경우 해당 청구인이 개인 표적이 되었음을 나타내는 권력 남용 양상이 확인된 후에도 이러한 절차를 선호할 수도 있다(*Navalnyy and Others v. Russia*, 2022, § 18). 또는 재판소는 이 조항의 위반이 없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Udaltsov v. Russia*, 2020, §§ 195–196).

28. 재판소는 대개 직권으로 제18조 적용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 그러나 *Azizov and Novruzlu v. Azerbaijan*, 2021 사건에서 재판소는 직권으로 이 문제를 제기하여 제18조 위반으로 판단하였다(또한 *Haziyyev v. Azerbaijan*, 2018, § 43, *Rustamzade v. Azerbaijan*, 2019, § 56, 및 *Savalanli and Others v. Azerbaijan*, 2022, § 107: 이 사건들을 피청구국 정부에 전달할 때 재판소가 자체적으로 제18조에 관한 질문을 제기하여 결국 해당 사안이 별도의 심사를 필요로 하지 않거나 국내 법원에서 명시적으로 또는 실체적으로 제기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경우 참조).

29. 재판소는 실체적으로 제기된 제18조에 따른 청구를 검토하였다(*Lutsenko v. Ukraine*, 2012, § 104; *Mammadli v. Azerbaijan*, 2018, § 80).

### III. 제한의 목적

#### A. “이면의 목적” 개념

30. 이면의 목적이란 협약의 관련 조항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당국이 선언한 목적(또는 전후관계상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목적)과 다른 목적이다(*Merabishvili v. Georgia* [GC], 2017, § 292; *Khodorkovskiy v. Russia*, 2011, § 255; *Lutsenko v. Ukraine*, 2012, § 106; *Tymoshenko v. Ukraine*, 2013, § 294; *Khodorkovskiy and Lebedev v. Russia*, 2013, § 899; *Ilgar Mammadov v. Azerbaijan*, 2014, § 137; *Rasul Jafarov v. Azerbaijan*, 2016, § 153; *Tchankotadze v. Georgia*, 2016, § 113).

31. 이면의 목적이라는 개념은 “악의”의 개념과 관련이 있지만, 사건별로 반드시 동일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Merabishvili v. Georgia* [GC], 2017, § 283).

32. 재판소는 유럽인권협약 당사국의 국가 당국이 선의로 행동했다는 일반적이고 반박 가능한 가정을 적용하고 악의 입증에 조사를 집중하는 이전의 접근 방식과 거리를 두었다(*Khodorkovskiy v. Russia*, 2011, § 255; *Lutsenko v. Ukraine*, 2012, § 106; *Tymoshenko v. Ukraine*, 2013, § 294; *Khodorkovskiy and Lebedev v. Russia*, 2013, § 899; *Ilgar Mammadov v. Azerbaijan*, 2014, § 137; *Rasul Jafarov v. Azerbaijan*, 2016, § 153). 그 대신, 이면의 목적의 존재 유무 및 그에 따른 권력 남용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목표로 삼는다 (*Merabishvili v. Georgia* [GC], 2017, §§ 282–283).

33. 동시에, 신의성실 의무의 중요성은 특히 제18조 위반으로 판단된 경우와 같이 재판소의 판결을 집행하는 상황에 가장 중요하다. 피청구국이 제46조에 따른 의무를 준수했는지 검토할 때, 재판소는 피청구국이 집행될 판결의 “결론과 정신”에 부합하는 방식에 따라 “선의”로 행동했는지 고려한다(*Ilgar Mammadov v. Azerbaijan* (침해 소송) [GC], 2019, §§ 214 및 217; *Kavala v. Türkiye* [GC], 2022, § 169).

34. 재판소는 청구인이 자신의 청구를 제기한 방식을 고려하여 이면의 목적에 대한 주장을 검토한다(*Selahattin Demirtaş v. Turkey (no. 2)* [GC], 2020, § 425).

35. 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이면의 목적에 대한 주장을 검토하였다.

- 정보 또는 기타 이득을 얻기 위해 청구인 협박 또는 압박(*Gusinskiy v. Russia*, 2004, § 76; *Cebotari v. Moldova*, 2007, § 53; *Merabishvili v. Georgia* [GC], 2017, § 353; *Dochnal v. Poland*, 2012, § 116)
- 청구인 처벌, 침묵 시키기 및/또는 활동 방해(*Ramishvili and Kokhraidze v. Georgia* (dec.), 2007; *Lutsenko v. Ukraine*, 2012, § 109; *Tymoshenko v. Ukraine*, 2013, § 299; *Ilgar Mammadov v. Azerbaijan*, 2014, § 143; *Rasul Jafarov v. Azerbaijan*, 2016, § 162; *Mammadli v. Azerbaijan*, 2018, § 104; *Rashad Hasanov and Others v. Azerbaijan*, 2018, § 125; *Aliyev v. Azerbaijan*, 2018, § 215; *Natig Jafarov v. Azerbaijan*, 2019, § 70; *Kavala v. Turkey*, 2019, § 232; *Ibrahimov and Mammadov v. Azerbaijan*, 2020, § 157; *Khadija Ismayilova v. Azerbaijan (no. 2)*, 2020, § 119; *Yunusova and Yunusov v. Azerbaijan (no. 2)*, 2020, § 194; *Sabuncu and Others v. Turkey*, 2020, § 249; *Şık v. Turkey (no. 2)*, 2020, § 207; *Ahmet Hüsrev Altan v. Turkey*, 2021, § 238; *Mirgadirov v. Azerbaijan and Turkey*, 2020, § 133; *Azizov and Novruzlu v. Azerbaijan*, 2021, § 79; *Democracy and Human Rights Resource Centre and Mustafayev v. Azerbaijan*, 2021, § 110; *Miroslava Todorova v. Bulgaria*, 2021, § 213; *Kutayev v. Russia*, 2023, § 141; *Juszczyszyn v. Poland*, 2022, § 337)

- 형사 기소 및 기타 관련 절차의 정치적 및/또는 경제적 동기(*Khodorkovskiy v. Russia*, 2011, § 254; *OAO Neftyanaya Kompaniya Yukos v. Russia*, 2011, § 665; *Khodorkovskiy and Lebedev v. Russia*, 2013, § 889; *Nastase v. Romania* (dec.), 2014, § 109; *Tchankotadze v. Georgia*, 2016, § 114; *Merabishvili v. Georgia* [GC], 2017, § 332; *Batiashvili v. Georgia*, 2019, §§ 101–103; *Korban v. Ukraine*, 2019, § 203; *Ovcharenko and Kolos v. Ukraine*, 2023, § 130; *Ugulava v. Georgia*, 2023, § 123)
- 정치적 다원주의 억압 및 정치 토론의 자유 제한(*Navalnyy v. Russia* [GC], 2018, § 175; *Navalnyy v. Russia (no. 2)*, 2019, § 98; *Selahattin Demirtaş v. Turkey (no. 2)* [GC], 2020, § 437; *Yuksekdag Senoglu and Others v. Türkiye*, § 639)

## B. 방법론 및 일반 원칙

### 1. 단일 목적 및 복수 목적

36. 때때로 협약에 규정되지 않은 목적을 위해 권리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협약에 규정된 목적과 이면의 목적 둘 다를 위해 제한을 가하여 복수의 목적을 추구하는 것으로 보는 것도 가능하다(*Merabishvili v. Georgia* [GC], 2017, § 292; *Miroslava Todorova v. Bulgaria*, 2021, § 195; *Juszczyzyn v. Poland*, 2022, § 310).

37. 따라서 제18조에 따른 주장을 고려할 때 재판소는 다음을 입증해야 한다.

- 청구인의 권리 또는 자유를 이면의 목적을 위해 제한하였는가
- 해당 제한은 협약에 규정된 목적과 이면의 목적을 모두 추구하였는가, 즉 복수의 목적이 있었는가
- 어느 목적이 우세하였는가(*Merabishvili v. Georgia* [GC], 2017, § 309)

38. 재판소는 또한 청구인의 권리나 자유의 제한이 정당한 목적을 추구한다는 가정 하에 진행하고 복수의 목적이 ‘있을 수 있다’는 관점에서 사건을 검토할 수 있다.

39. 예를 들어 *Azizov and Novruzlu v. Azerbaijan*, 2021 사건에서 재판소는 청구인들의 구금이 제5조제1항제(c)호에 명시된 정당한 목적을 추구하였는지 검토할 수 없었는데, 이는 해당 실체적 조항을 단독으로 취한 청구는 절차적 사유로 각하해야 한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국내 구제 절차 미완료). 재판소는 해당 사안을 제18조에 따라 ‘별도로’ 검토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재판소는 정당한 목적이 있었다는 가정 하에 진행하였으며, 청구인들의 구금 이면에 ‘잠재적인’ 복수의 목적을 근거로 사건을 심사하였다(재판소는 오히려 제5조제3항과 결합된 제18조를 검토하였다. 제5조제3항 단독으로는 해당 청구가 심사 적격이라고 선언되었다)(*Azizov and Novruzlu v. Azerbaijan*, 2021, §§ 68–70).

40. 이와 유사하게 *Juszczyzyn v. Poland*, 2022 사건에서 재판소는, 문제가 된 제한의 위법성에 대한 판단 결과에 비추어, 해당 제한이 제8조를 단독으로 취했을 때 정당한 목적을 추구하였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지 않았다. 그러나 재판소는 제8조와 결합된 제18조에 따라 청구인의 제소를 검토하기 위하여, 청구인에 대한 조치는 정부가 의거하는 정당한 목적을 추구했다는 가정을 받아들였다. 따라서 재판소는 복수의 목적에 기초하여 사건을 진행하였다(*Juszczyzyn v. Poland*, 2022, §§ 318–321).

41. 복수의 목적이 있는 상황을 위해 공식화된 다음 원칙도 정당한 목적 또는 목표가 없는 상황에서 지침을 제공한다(*Navalnyy v. Russia* [GC], 2018, § 165; *Miroslava Todorova v. Bulgaria*, 2021, § 195; *Juszczyzyn v. Poland*, 2022, § 310).

## 2. “주된 목적” 개념

42. 모든 공공 정책 또는 개별 수단에는 “숨겨진 의제”가 있을 수 있다(*Khodorkovskiy v. Russia*, 2011, § 255; *Lutsenko v. Ukraine*, 2012, § 106; 및 *Tymoshenko v. Ukraine*, 2013, § 294). 어떤 제한이 복수의 목적을 추구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각각의 제한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목적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는 그 자체로 제18조 위반이 될 수 없다. 반면에, 해당 제한이 협약에 규정된 목적을 추구한다고 해서 제18조 위반을 배제하는 것도 아니다. 규정된 목적이 있으므로 이면의 목적은 없다고 할 수 없다(*Merabishvili v. Georgia*, 2017, §§ 303–304; *Miroslava Todorova v. Bulgaria*, 2021, §§ 197–198; *Juszczyszyn v. Poland*, 2022, § 312).

43. 제한이 협약에 규정된 목적 및 이면의 목적을 추구하는 경우, 재판소는 어느 것이 주된 목적인지 결정한다. 이 경우 주된 목적이란, 이에 따라 당국이 정당하게 움직이고 당국의 노력이 가장 집중된 목적이다(*Merabishvili v. Georgia* [GC], 2017, § 303; *Navalnyy v. Russia* [GC], 2018, § 165; 및 *Korban v. Ukraine*, 2019, § 211–213).

44. 실제적 협약 조항이 허용하는 제한은 해당 조항이 허용하는 목적을 추구하기 때문에 조항에 부합할 수는 있지만, 규정된 목적이 겉으로는 존재하였지만 실제로는 당국의 노력이 가장 집중된 외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하는 단순한 위장이었기 때문에 여전히 제18조를 침해한다(*Merabishvili v. Georgia* [GC], 2017, § 305). 즉, 어떤 제한이 이면의 목적도 추구한 것으로 입증되는 경우, 이면의 목적이 주된 목적인 경우에만 제18조 위반이 성립된다(*ibid.*, § 318; *Navalnyy v. Russia* [GC], 2018, § 165; 및 *Korban v. Ukraine*, 2019, § 211–213; *Miroslava Todorova v. Bulgaria*, 2021, § 199; *Juszczyszyn v. Poland*, 2022, § 314).

45. 반대로, 규정된 목적이 주된 목적이고 당국이 다른 이점도 얻으려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국을 정당하게 움직이게 한 목적이라면, 해당 제한은 제18조에 위배되지 않는다(*Merabishvili v. Georgia* [GC], 2017, § 305, 및 *Navalnyy v. Russia* [GC], § 165; *Miroslava Todorova v. Bulgaria*, 2021, § 199).

46. 특정 사건에서 어떤 목적이 주된 목적인지는 상황을 전부 따져보아야 한다(*Merabishvili v. Georgia* [GC], 2017, § 307; *Azizov and Novruzlu v. Azerbaijan*, 2021, §§ 75; *Miroslava Todorova v. Bulgaria*, 2021, § 200; *Juszczyszyn v. Poland*, 2022, § 315).

47. 이 점을 평가할 때, 재판소는 당국이 주장된 이면의 목적을 추구하려고 어느 정도로 ‘결심’하였는지 분석한다(*Juszczyszyn v. Poland*, 2022, § 329). 우선, 당국이 구체적인 개인 또는 집단을 표적으로 한 행동을 가장 중시하였는지, 주어진 사건이 피청구국의 확립된 권력 남용 양상에 속하는지 중점적으로 고려할 것이다(*Azizov and Novruzlu v. Azerbaijan*, 2021, §§ 76–77).

## 3. 주장된 이면의 목적의 성격 및 비난 가능성의 정도

48. 재판소는 주장된 이면의 목적의 성격과 비난 가능성의 정도를 고려하고, 협약이 법의 지배가 규율하는 민주사회의 이상과 가치를 유지하고 증진하기 위해 고안되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Merabishvili v. Georgia* [GC], 2017, § 307; *Navalnyy v. Russia* [GC], 2018, § 165; *Korban v. Ukraine*, 2019, § 214; *Miroslava Todorova v. Bulgaria*, 2021, § 200; *Juszczyszyn v. Poland*, 2022, § 315).

49. 재판소는 이면의 목적이 있다는 주장이 국내 상황과 일관되는 경우 또는 어느 것이 주된 목적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한다(*Merabishvili v. Georgia* [GC], 2017, § 307; *Navalnyy v. Russia* [GC], 2018, §§ 173–174; 및 *Selahattin Demirtaş v. Turkey (no. 2)* [GC], 2020, § 436).

50. 이와 관련하여 재판소는 청구인이 제기한 제18조 청구의 핵심이 정의한 대로 문제가 된 제한의 영향 및 이면의 목적이 중요한 정도를 평가할 것이다. 특히, 재판소는 문제가 된 제한이 단순히 청구인 또는 그의 동료 활동가/지지자에게만 영향을 미치는지, 아니면 공공의 이익을 이유로만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사회를 조직하는 수단이라는 민주주의의 본질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할 수 있다(*Navalnyy v. Russia* [GC], 2018, §§ 173–174; *Natig Jafarov v. Azerbaijan*, 2019, § 69; *Kavala v. Turkey*, 2019, § 231; 및 *Selahattin Demirtaş v. Turkey (no. 2)* [GC], 2020, § 436).

#### 4. 지속 상황

51. 협약 권리의 제한이 지속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제18조에 위배되지 않으려면, 그 주요 목적은 협약이 내내 규정한 목적이어야 한다. 따라서 재판소는 기간 내내 어떤 목적을 추구하였는지 평가해야 한다. 특히, 주된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평가는 통시적으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재판소는 문제된 제한이 적용되는 과정 중 어느 시점에서 이면의 목적이 규정된 목적을 대체하거나 주된 목적이 되었는지 확인한다(*Merabishvili v. Georgia* [GC], 2017, §§ 308 및 351, 및 *Navalnyy v. Russia* [GC], 2018, § 171).

#### 5. 반복 제한 및 권력 남용 양상

52. 구체적이고 개인적으로 청구인을 표적으로 삼는 일련의 반복 조치는 검토 기간 중 주된 목적이 달라질 수 있는 지속 상황으로 분석될 수 있다. 처음에는 정당한 목적 또는 목표로 보였던 것이 시간이 흐르면서 그럴듯하게 보이지 않을 수 있다(*Navalnyy v. Russia* [GC], 2018, §§ 165–171).

53. 피청구국이 이면의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가하는 제한의 반복성은 중요하게 고려할 사항이다. 다른 청구인들이 일련의 유사한 사건을 제기하거나 동일한 청구인을 대상으로 일련의 동일한 조치가 취해진 경우, 재판소는 그러한 사례를 전체적으로 볼 때 특정한 집단이나 개인을 표적으로 삼은 권력 남용 양상에 해당하는지 평가한다(*Navalnyy v. Russia* [GC], 2018, § 167–170; 및 *Aliyev v. Azerbaijan*, 2018, § 223).

54. 이러한 경우가 맞다면, 재판소는 문제가 된 국가에 이면의 목적이 있다는 근거 있는 주장이 이어져서 확립된 양상에 부합하는지 살필 것이다(*Navalnyy v. Russia (no. 2)*, 2019, § 94; *Natig Jafarov v. Azerbaijan*, 2019, §§ 64–65; *Ibrahimov and Mammadov v. Azerbaijan*, 2020, §§151–152; *Khadija Ismayilova v. Azerbaijan (no. 2)*, 2020, §§ 113–114; 및 *Yunusova and Yunusov v. Azerbaijan (no. 2)*, 2020, § 187–188; *Azizov and Novruzlu v. Azerbaijan*, 2021, § 76).

55. 피청구국의 권력 남용 양상이 확립된 경우, 이 요소는 해당 사건에 이면의 목적이 존재함을 확인하는 것과 연관된다(*Democracy and Human Rights Resource Centre and Mustafayev v. Azerbaijan*, 2021, § 109). 또한, 복수의 목적이 있는 상황에서 해당 국가 당국이 추구하는 이면의 목적이 주된 목적이라고 지적할 수도 있다(*Azizov and Novruzlu v. Azerbaijan*, 2021, § 77).

56. 재판소는 단 한 건의 사건밖에 없다 하여도 국내 정황상 해당 사건이 단발적인 예시가 아니며 청구인과 동일 범주 또는 집단에 속하는 다수의 사람들에게 동일한 제한이 가해질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권력 남용의 양상을 확립할 수 있다(*Selahattin Demirtaş v. Turkey (no. 2)* [GC], 2020, §§ 427–428).

57. 피청구국의 제18조 위반이 분명한 권력 남용의 양상을 띠는 경우라 해도, 이는 청구인의 특정 행위가 협약 제17조의 의미에서 권리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재판소의 검토를 면제하지 않는다(*Yuksekdag Senoglu and Others v. Türkiye*, 2022, §§ 487–488 및 638–640).

## 6. 복수의 이면의 목적 주장

58. 복수의 이면의 목적에 대한 주장을 검토하는 경우 재판소는 청구인이 인용한 각각의 목적 중 한 가지 이면의 목적이 주된 목적인지 평가할 것이다(*Merabishvili v. Georgia* [GC], 2017, § 319).

59. 경우에 따라 재판소는 정치적 동기에 의한 기소라는 주장과는 별개로 사안을 파헤칠 수 있도록 사건의 독특한 특징에 초점을 맞추어 조사를 진행하기도 한다(*Lutsenko v. Ukraine*, 2012, § 108; *Tymoshenko v. Ukraine*, 2013, § 298; *Ilgar Mammadov v. Azerbaijan*, 2014, § 140; 및 *Rasul Jafarov v. Azerbaijan*, 2016, § 155).

## C. 오로지 이면의 목적에 근거한 제한

60. 재판소가 제5조와 결합된 제18조 위반으로 판단한 다음과 같은 사건에서 청구인들의 구금은 구금할 정당한 근거가 없거나(*Lutsenko v. Ukraine*, 2012, §§ 63–65 및 67–72; *Tymoshenko v. Ukraine*, 2013, §§ 269–271; *Navalnyy v. Russia* [GC], 2018, § 71; 및 *Navalnyy v. Russia (no. 2)*, 2019, § 93; *Kutayev v. Russia*, 2023, § 135) 청구인들에 대한 혐의가 제5조제1항제(c)호가 의미하는 “합리적인 의심”에 근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로지 이면의 목적만 추구한 것이었다(*Cebotari v. Moldova*, 2007, § 52; *Ilgar Mammadov v. Azerbaijan*, 2014, § 100; *Rasul Jafarov v. Azerbaijan*, 2016, § 133; *Mammadli v. Azerbaijan*, 2018, § 96; *Rashad Hasanov and Others v. Azerbaijan*, 2018, § 119; *Aliyev v. Azerbaijan*, 2018, § 164; *Natig Jafarov v. Azerbaijan*, 2019, § 68; *Kavala v. Turkey*, 2019, § 218; *Ibrahimov and Mammadov v. Azerbaijan*, 2020, § 149; *Khadija Ismayilova v. Azerbaijan (no. 2)*, 2020, § 111; *Yunusova and Yunusov v. Azerbaijan (no. 2)*, 2020, § 185; 및 *Selahattin Demirtaş v. Turkey (no. 2)* [GC], 2020, § 423). *Navalnyy v. Russia* [GC], 2018, *Aliyev v. Azerbaijan*, 2018 및 *Democracy and Human Rights Resource Centre and Mustafayev v. Azerbaijan*, 2021 사건에서 재판소는 다른 실체적 조항(제11조, 제8조, 제1의정서 제1조 및 제4의정서 제2조)과도 결합된 제18조 위반으로 판단하며, 문제가 된 제한은 해당 조항에 따른 정당한 목적 중 어느 것도 추구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다.

### 1. 확립된 권력 남용 양상과 무관한 사건

61. *Oferta Plus S.R.L. v. Moldova*, 2006 사건과 밀접하게 연결된 *Cebotari v. Moldova*, 2007 사건에서 청구인은, 국영 배전(配電) 회사인 몰드트랜스일렉트로(Moldtranselectro)의 수장 자격으로, 우크라이나가 몰드트랜스일렉트로에 공급하고 그 중에서도 국가 기관이 소비한 전력 대금을 지불한 민간 기업인 오페르타 플러스(*Oferta Plus*)를 위한 국채 발행을 몰도바 재무부에 요청하였다. 그 후 오페르타 플러스는 해당 채권의 현금화를 거부한 재무부를 제소하여 승소하였다. 이후 오페르타 플러스는 자사에 유리한 최종 판결이 집행되지 않자 이를 재판소에 제소하였고 이를 통보받은 몰도바 정부는 해당 판결을 취소하고 회사의 최고 경영자와 청구인에 대한 대규모 국가 재산 횡령 혐의로 형사 절차를 개시하였다. 이 혐의는 오페르타 플러스가 국가 기관에 특별히 공급한 전기 요금을 지불하지 않아 국고 채권을 부정하게 취득했다는 전제에 근거하였다. *Oferta Plus S.R.L. v. Moldova*, 2006 사건에서 재판소는 문제가 된 형사 절차는 회사의 재판소 제소를 방해하려 한 것이라는 사유로 제34조 위반이라고 판단하였다(§ 143). *Cebotari v. Moldova*, 2007 사건에서 재판소는, 오페르타 플러스와 몰도바 재무부 간 분쟁에 대한 민사법원의 최종 판결에서 명백히 밝혀진 내용을 고려하여, 몰도바 정부는 청구인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합리적인 의심의 존재를 입증하지 못하였으며, 그 결과 청구인의 체포 및 구금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을 미결구금한 유일한 목적은 청구인을 압박하여 오페르타 플러스의 재판소 청구를 막는 것이었다. 따라서 제5조제1항과 결합된 제18조가 위반되었다(§§ 52–53).

62. *Lutsenko v. Ukraine*, 2012 사건에서, 정권 교체 직후 전 내무부 장관이자 야당 지도자였던 청구인이 직권 남용 혐의로 기소되었다. 청구인은 혐의를 부인하는 인터뷰가 한 신문에 실린 직후 미결구금 상태로 재구금되었다. 청구인의 구금은 협약이 규정한 목적을 추구하지 않았으며, 재판소의 판단에 따르면 당국이 제시한 어떠한 사유도 제5조제1항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았다(§§ 66-74). 또한, 청구인이 언론과 소통한 것이 그러한 사유 중 하나로 명시적으로 언급되었다는 사실은 당국이 자신의 혐의에 공개적으로 이의를 제기한 청구인을 처벌하려 했음을 분명히 보여주며, 이는 제5조와 결합된 제18조에 위배되는 이면의 목적에 해당한다(§§ 108-110).

63. *Tymoshenko v. Ukraine*, 2013 사건도 야당 지도자와 전 총리가 정권 교체 직후 월권 행사 및 직권 남용 혐의로 형사 기소를 당한 사안이었다. 재판소는 마찬가지로 청구인의 미결구금이 제5조제1항이 예정한 목적을 추구하지 않으므로 해당 조항의 단독 위반이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사실적 전후관계와 국내 당국이 제시한 이유에 따르면 청구인의 구금을 주로 정당화하는 것은 사실 청구인이 절차를 방해하고 경멸적인 태도를 취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재판소의 입장에서 청구인의 구금은 오로지 이면의 목적, 즉 문제가 된 재판 중 청구인의 행동을 이유로 청구인의 처벌을 추구한 것으로 제5조와 결합된 제18조의 위반이다(§§ 299-301).

64. *Kavala v. Turkey*, 2019 사건에서 청구인은 사업가이자 인권운동가로 다수의 비정부기구 설립에 기여하였으며, 2013년 대규모 시위와 관련하여 내란을 일으키려 한 혐의와 2016년 군사 쿠데타 미수와 관련하여 무력과 폭력으로 정부 전복을 꾀한 혐의로 구류 처분을 받았다. 청구인은 전자의 혐의로만 대통령의 공개 고발 이후 기소되었지만, 그때까지 청구인은 1년 이상 미결구금 상태로 별다른 수사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재판소는 청구인에 대한 조치가 합리적인 의심으로 정당화되지 않았고, 본질적으로 국내법상 범죄 행위로 합리적으로 간주될 수 없는 사실에 근거한 것이며, 더욱이 협약 제10조 및 제11조가 보장하는 청구인의 권리 행사와 상당히 관련되어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상황은 제5조제1항을 단독으로 위반한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또한 제18조에 따른 청구라는 맥락에서도 고려되었다. 문제가 된 조치는 인권운동가이자 비정부기구 활동가인 청구인을 압박하여 침묵하게 하려는 이면의 목적만을 추구하였으므로 제18조 위반으로 판단되었다. 특히 다원적 민주주의에서 해당 집단의 특수한 역할을 고려한다면, 상당히 심각한 이면의 목적이었다(§§ 220-232).

65. *Kutayev v. Russia*, 2023 사건에서 청구인은 체첸의 정치인이자 인권활동가로 스탈린의 명령에 따른 1944년 체첸인 강제 추방의 70주년 기념 회의를 조직하였다. 다음 날 람잔 카디로프(Ramzan Kadyrov) 체첸 대통령은 참가자들을 만나 본인이 새로 선포한 추모일인 5월 10일이 아닌 기존 추모일인 2월 23일에 가까운 회의 일정에 강한 불만을 표했다. 청구인은 상기 회의에 카디로프와 함께 소환되었으나 참석을 거부하였고, 다음날 체포되어 마약 소지 혐의로 미결구금되었다. 재판소는 제5조제1항 위반을 별도로 판단하였다. 재판소는 청구인의 자유 박탈이 자의적이었으며 경찰관과 수사관의 악의적 요소가 분명히 포함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재판소는 또한 당국의 조치가 제18조 위반인 타당하지 않은 동기, 특히 청구인이 새로운 추모일을 준수하지 않고 카디로프의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을 처벌하려는 이면의 목적이 전적으로 주도하였다고 보았다(§§ 134-135 및 141).

## 2. 특정 개인 표적화 암시 양상

66. *Navalnyy v. Russia* [GC], 2018 사건에서 청구인은 야당 주요 인사이자 반부패 운동가로 다양한 평화적 대중 집회에서 2년간 7차례 체포되었고, 엄밀히는 불법행위인 행정적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재판소는 청구인의 체포와 구금이 자의적이고 법에 어긋나므로 제5조1항을 단독으로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그 중 5회는 문제가 된 조치가 비례성을 상실하였고 2회는 제11조제2항이 규정하는 정당한 목적을 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11조를

단독으로 위반하였다고도 판단하였다. 특히, 다섯 번째 체포되던 경우 청구인은 정치 시위하던 무리를 떠난 후 한 집단의 미행을 당하다 처벌받았다. 여섯 번째 체포되었을 때 청구인은 공개 변론 입장을 거부당해 법원 앞에 있던 활동가 무리 사이에 있었다. 제18조에 따라 재판소는 각각 채택되어 복수의 목적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이 두 가지 체포 사건을 집중 검토하였다. 그러나 재판소는, 사건의 순서와 양상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을 야당 정치인으로 표적화하여 청구인 본인이나 동료 활동가/지지자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본질에 영향을 미친 것은 “상당히 심각한” 이면의 목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맥락을 넓혀 사건 당시 러시아 당국이 야당의 정치 활동을 통제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볼 때,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체포에서 제한을 가한 것은 이면의 목적, 즉 정치적 다원주의 억압으로 제5조 및 제11조와 결합된 제18조 위반이라고 판단되었다(§§ 163–176).

67. *Navalnyy v. Russia (no. 2)*, 2019 사건에서 동일한 청구인은 통신, 서신, 인터넷, 라디오, 텔레비전 사용 제한과 더불어 가택 연금 처분을 받았다. 재판소는 해당 조치가 범죄 수사의 요건과 명백한 연관성 없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제5조 및 제10조를 각각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Navalnyy v. Russia* [GC], 2018 사건(여섯 번째 및 일곱 번째 체포 – 상기 참조)에서 검토된 두 번의 체포 직후 청구인에게 부과되었으므로, 재판소는 사건의 순서와 상기 대재판부 판결에서 분석된 전후관계 증거에 비추어 이를 고려하였다. 문제가 된 조치는 청구인의 공적 활동을 축소하여 정치적 다원주의를 억압하는 동일한 이면의 목적을 추구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제5조와 결합된 제18조 위반이다(§§ 93–98).

### 3. 특정 집단 표적 권력 남용 양상

68. *Selahattin Demirtaş v. Turkey (no. 2)* [GC], 2020 사건에서 청구인은 튀르키예의 친쿠르드족 야당 지도자로 헌법 개정에 따라 국회의원 면책특권이 박탈된 154명의 선출직 국회의원 중 한 명이었다. 개정안에 따라 개정안의 채택일이 되기도 전에 대상 국회 의원 모두의 면책 특권이 박탈되었다. 이 개정안은 튀르키예에서 심각한 폭력 사태가 발생하고 PKK(쿠르드 노동자당)가 개입하면서 “쿠르드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이 결렬된 데에서 기인한다. 청구인은 상기 문제에 대한 연설과 특정한 합법 집회에 참여하여 테러행위자 혐의로 미결구금되었다. 재판소는 청구인의 혐의는 본질적으로 국내법상 합리적으로 범죄 행위라고 볼 수 없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으며 주로 청구인의 협약 권리를 청구인이 행사한 것과 관련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의 구금에 정당한 목적이 있다고 확인되지 않았고, “합리적인 의심” 기준과 제10조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서 제5조제1항 위반으로 판단되었다. 재판소는 다수의 야당 의원과 정치인들이 동시에 기소 및 구금된 것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사건이 반대하는 목소리를 표적으로 삼는 특정 양상을 따른다고 판단하였다. 재판소는 특히 두 차례의 결정적인 선거 운동(중요한 헌법 개정에 관한 국민 투표 및 대통령 선거) 기간에 청구인이 장기간 구금된 것은 다원주의를 억압하고 정치 토론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이면의 동기를 추구했기 때문에 제5조와 결합된 제18조 위반이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437) (또한, 그 외 야당 의원들이 제기한 사건인 *Yuksekdag Senoglu and Others v. Türkiye*, 2022, §§ 638–640 참조).

69. 아제르바이잔에 대한 일련의 유사한 사건에서, 재판소는 제18조 위반인 보복 기소와 형법 남용을 통해 정부 비판자, 시민 사회 활동가 및 인권 옹호자를 자의적으로 체포하고 구금하는 관련된 양상을 확인하였다(*Ilgar Mammadov v. Azerbaijan*, 2014; *Rasul Jafarov v. Azerbaijan*, 2016; *Mammadli v. Azerbaijan*, 2018; *Rashad Hasanov and Others v. Azerbaijan*, 2018; *Aliyev v. Azerbaijan*, 2018, § 223; *Natig Jafarov v. Azerbaijan*, 2019, §§ 64–65; *Ibrahimov and Mammadov v. Azerbaijan*, 2020, § 152; *Khadija Ismayilova v. Azerbaijan (no. 2)*, 2020, §§ 113–114; 및 *Yunusova and Yunusov v. Azerbaijan (no. 2)*, 2020, § 187–188).

70. *Ilgar Mammadov v. Azerbaijan*, 2014 사건에서 청구인은 정부에 비판적인 야당 정치인으로 본인이 현장에 도착하기 하루 전에 자발적으로 시작된 현지 폭동의 직접 경험담을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게시하였다. 즉시 언론에 보도된 청구인의 블로그 게시물은 정부의 사건 설명과 모순되며 정부가 대중으로부터 감추려는 것으로 알려진 출처의 정보를 담고 있었다. 다음 날 검찰총장과 내무부는 청구인이 국내 상황을 자극하기 위해 불법적인 행동을 했다고 비난하는 공동 언론 성명을 발표하였다. 며칠 후 심문을 받은 청구인은 해당 폭동을 조직한 혐의로 기소되어 구금되었다. 재판소는 검찰이 청구인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일으킬 수 있는 객관적인 정보나 증거를 국내 법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5조제1항의 단독 위반이라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재판소는 상기 정황을 통해 청구인의 구금이 블로그 게시물과 관련이 있으며, 따라서 정부를 비판하고 정부가 숨기려던 정보를 유포하려는 청구인을 침묵하게 하고 처벌하려는 이면의 목적을 추구했다고 추론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의 구금은 제5조와 결합된 제18조 위반에 해당하였다(§§ 142-143).

71. 다음 사건들에서는 아제르바이잔의 유명 시민사회 활동가, 인권 옹호자, 비정부기구 지도자들이 구류 처분되었으며, 주로 불법 기업활동, 대규모 탈세 및/또는 비정부기구 해외 보조금 수령 및 사용과 관련된 행정 비리에 근거한 권력 남용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는 전반적으로 아제르바이잔의 인권운동가들을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캠페인과 비정부기구 활동 및 기금에 대한 법적 규제가 더욱 가혹해지고 제한이 심해지는 맥락에서 발생하였다.

72. *Aliyev v. Azerbaijan*, 2018 사건 및 *Rasul Jafarov v. Azerbaijan*, 2016 사건에서 청구인들은 국제기구 업무 상황을 포함하여 아제르바이잔 인권 문제와 관련된 다양한 보고서 작성에 관여하였다. 이들은 유럽평의회 행사에 참석하여 아제르바이잔 당국의 인권 유린을 비판한 직후 체포되었다.

73. *Mammadli v. Azerbaijan*, 2018 사건에서 청구인은 선거 감시 전문 비정부기구 의장이자 공동 설립자였다. 2013년 대선이 민주적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비판하는 보고서를 발표한지 며칠 되지 않아 해당 비정부기구의 재정 활동 부정 혐의와 관련된 형사 절차가 개시되었다. 청구인은 한 달 후 체포되어 기소되었다.

74. *Natig Jafarov v. Azerbaijan*, 2019 사건에서 청구인은 국민투표에서 채택이 제안된 헌법 개정 반대하는 야당 정치 운동의 공식 대표였다. 청구인은 국민투표 캠페인을 위한 등록 절차가 진행되는 단계에 체포되었고, 청구인의 야당 정치 운동이 해당 캠페인 참여를 중단한다는 결정을 발표하고 나서야 석방되었다.

75. *Khadija Ismayilova v. Azerbaijan (no. 2)*, 2020 사건에서 청구인은 대통령과 그 가족이 연루된 부패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유명 탐사 언론인으로 이와 관련하여 협박을 받았다(*Khadija Ismayilova v. Azerbaijan*, 2019 참조). 청구인은 대통령 행정실장이 청구인을 반역죄와 거짓 유포죄를 들어 공개 비난한 직후 강압으로 얻은 허위 주장에 근거하여 체포되었다.

76. *Yunusova and Yunusov v. Azerbaijan (no. 2)*, 2020 사건에서 청구인들은 아제르바이잔의 비정부기구 이사 및 선임 연구원으로 아르메니아측 단체와 양국 간 평화와 화해 촉진을 위한 공동 사업에 참여하였다. 청구인들은 특히 아르메니아 첩보 기관에 협조 등의 혐의로 체포되어 미결구금되었다.

77. 재판소는 청구인이 “합리적인 의심”이 부재한 가운데 미결구금에 처해져 제5조제1항제(c)호의 단독 위반이라고 판단하였다(*Yunusova and Yunusov v. Azerbaijan (no. 2)*, 2020, § 185; *Khadija Ismayilova v. Azerbaijan (no. 2)*, 2020, § 111; *Natig Jafarov v. Azerbaijan*, 2019, § 62; *Aliyev v. Azerbaijan*, 2018, § 164; *Rasul Jafarov v. Azerbaijan*, 2016, § 156; 및 *Mammadli v. Azerbaijan*, § 96). 청구인들은 “기존 사실관계에서는 범죄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를 합리적으로 발견할 수 없는” 중범죄 혐의로 기소되었다.

78. 이러한 사건들의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할 때, 재판소는 청구인들의 체포와 구금이 정치적 관여 및/또는 활동을 이유로 입을 다물게 하고 처벌하며 이를 추구하지 못하게 하려는 이면의 목적만을 추구하였기 때문에 제5조와 결합된 제18조 위반이라고 판단하였다 (*Yunusova and Yunusov v. Azerbaijan (no. 2)*, 2020, § 194; *Khadija Ismayilova v. Azerbaijan (no. 2)*, 2020, § 119; *Natig Jafarov v. Azerbaijan*, 2019, § 70; *Aliyev v. Azerbaijan*, 2018, § 215; *Rasul Jafarov v. Azerbaijan*, 2016, §§ 159–163; 및 *Mammadli v. Azerbaijan*, 2018, §§ 99–104). *Aliyev v. Azerbaijan*, 2018 사건에서도 재판소는 오로지 제8조제2항에 따른 정당한 목적을 추구하지 않았던 청구인의 자택과 사무실 수색 및 압수와 관련하여 같은 사유로 제8조와 결합된 제18조 위반이라고 판단하였다(*Aliyev v. Azerbaijan*, 2018, § 187).

79. *Democracy and Human Rights Resource Centre and Mustafayev v. Azerbaijan*, 2021 사건에서 청구인들은 변호사와 인권 보호 전문 비정부기구였다. 청구인들의 은행 계좌는 제3자에 대한 형사 사건과 연관되어 동결되었다. 청구인 변호사에게 여행 금지 조치도 부과되었다. 이러한 제한은 법적 근거나 정당한 목적이 없었고, 이에 따라 재판소는 제1의정서 제1조 및 제4의정서 제2조를 각각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Aliyev v. Azerbaijan*, 2018 사건에서 확립된 권력 남용 양상을 언급하며 재판소는 문제가 된 조치가 청구인들의 업무(재판소에 제기된 다수의 사건에서 법정 대리인 역할 포함)를 이유로 처벌하고 방해하기 위한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따라서 상기 실제적 조항들과 결합된 제18조 위반이 있었다.

80. 다음 사건들은 아제르바이잔에서 가장 활발한 청년 운동의 하나로 수많은 정부 반대 시위의 배후인 NGO NIDA 회원들을 기소한 사안이다.

81. *Rashad Hasanov and Others v. Azerbaijan*, 2018 사건에서 청구인들은 시민 사회 활동가 및 상기 비정부기구 이사였다. 청구인들은 다른 NIDA 회원들과 함께 참여하여 비전투 상황에서 아제르바이잔 군인들이 사망한 것에 항의하는 일련의 평화 시위를 적극적으로 조직하고 진행하였다. 예정된 시위 중 하나가 열리기 사흘 전 NIDA 회원 일부가 마약과 화염병 소지 혐의로 체포 및 기소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검찰총장과 국가안보부는 공동 언론 성명을 내고 “NIDA의 수많은 불법 활동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체포된 회원들은 폭력과 민간 소요사태 선동 계획을 세웠다고 밝혔다. 이 성명은 또한 일부 급진적인 파괴 세력이 국가의 사회·정치적 안정 훼손을 불법적으로 시도한다고 비난하기도 하였다. 며칠 후 청구인들은 구금되었고 화염병을 불법 입수한 후 과거 체포된 NIDA 회원의 아파트에 보관할 수 있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재판소는 검찰 당국이 문제의 화염병과 청구인들의 관계를 보여주는 어떠한 정보나 증거도 제시하지 않았고, 따라서 청구인들의 체포와 구금을 정당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의심”을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제5조제1항의 단독 위반으로 판단하였다. 아제르바이잔 시민사회를 탄압한 배경에 비추어 본 이런 상황을 바탕으로 재판소는 청구인들을 구금한 실제 목적이 청구인들의 적극적인 사회·정치 관여와 NIDA 활동을 침묵하게 하고 처벌하기 위한 것이며, 따라서 제5조와 결합된 제18조 위반이라고 결론지었다(§§ 122–125; 또한, 아래의 다음 절에서 동일한 혐의로 구금되어 동일한 형사 절차의 틀 내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다른 NIDA 회원들이 제기한 사건으로 복수의 목적이 있다는 가능성에 근거하여 검토된 *Azizov and Novruzlu v. Azerbaijan*, 2021 사건 참조).

82. *Ibrahimov and Mammadov v. Azerbaijan*, 2020 사건에서 청구인들은 상기 NGO NIDA 회원으로 아제르바이잔 전 대통령 동상에 반정부 구호가 적힌 낙서를 하고 그 사진을 사회 연결망 서비스에 유포한 후 몇 시간 만에 체포되었다. 이들은 마약 관련 중범죄혐의로 기소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재판소는 청구인들의 신분, 사건의 순서, 수사 및 당국의 행위 등을 고려할 때 의심의 “합리성”이라는 최소한의 기준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결론 짓고 제5조제1항을 단독으로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재판소는 전체적인 맥락과 당국이 NIDA와 그 회원들을 구체적인 표적으로 삼았음을 드러내는 위 *Rashad Hasanov and Others v. Azerbaijan*, 사건에서 재판소가 판단한 것을 고려하여 청구인들의 구금과 기소의 배후에 있는

실제 목적은 상기 반정부 행위에 대한 처벌임을 분명히 하였다. 따라서 제5조와 결합된 제18조 위반으로 판단하였다(§§ 151-157).

## D. 복수의 목적을 추구하는 제한

### 1. 확립된 권력 남용 양상과 무관한 사건

83. 다음 사건에서 재판소는 청구인의 구금이, 제5조제1항제(c)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관할 사법당국에 청구인들을 회부한다는 목적을 추구하면서도, 주로 협약에 규정되지 않은 다른 목적을 위한 것이라는 사유로 제5조제1항과 결합된 제18조 위반이라고 판단하였다.

84. *Gusinskiy v. Russia*, 2004 (§§ 73-78) 사건에서 청구인들은 민간 미디어 지주회사인 미디어모스트(Media Most)의 전 회장 겸 대주주로 국가가 통제하는 천연가스를 독점한 가스프롬과 채무 문제로 격렬한 분쟁에 휘말린 상태였다. 청구인은 사기 혐의로 체포되어 수감되었다. 구금되어 있는 청구인에게 언론·대중전달부 장관 대행은 가스프롬(Gazprom)이 결정할 가격에 회사를 매각한다면 기소를 취하하겠다고 제안하였다. 당사자들이 합의에 서명하고 장관 대행이 이를 승인하였다. 며칠 후 수사관은 청구인이 미디어모스트의 주식을 자발적으로 국영 법인에 양도하여 국가의 이익에 끼친 손해를 상당히 보상하였다는 사유로 기소를 유예하였다. 재판소는 수사 당국이 수집한 증거로 청구인이 사기 범죄를 저질렀을 지도 모른다고 “객관적 관찰자를 납득”시킬 수도 있다고 보았지만, 사실관계로 보면 청구인의 기소가 실제로는 “상업적인 협상 전략의 일부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강력하게 시사한다. 청구인을 구금한 주된 목적은 관할 사법 당국에 회부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를 매각하도록 협박하기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제18조가 위반되었다(§ 76).

85. *Merabishvili v. Georgia* [GC], 2017 사건에서 청구인은 정권 교체 직후 전직 총리이자 제1야당 당수로 황령, 권한 남용 및 그 외 범죄 혐의로 미결구금되었다. 미결구금 중이던 어느 밤, 청구인을 감방에서 은밀히 데리고 나가 또다른 전직 총리의 사망과 사카슈빌리(Saakashvili) 전 대통령의 재정 활동에 대한 검찰 심문을 진행하였다. 재판소는 죄가 될만한 자료에서 청구인에 대한 의심의 합리성에 의문을 제기할 만한 내용은 없다고 판단하였다. 청구인의 미결구금은 합법적이며 제5조제1항제(c)호와 일치하는 목적을 추구하였다(§§ 187, 206 and 208). 그러나 미결구금이 지속 상황에 해당하므로 재판소는 전체 구금 기간 동안 어떤 목적을 추구했는지, 어느 목적이 주된 목적이었는지 평가하여야 했다. 청구인이 심문을 받기 위해 감방을 나설 때까지, 즉 거의 7개월 동안 당국이 어떤 이면의 목적을 추구했다는 증거는 없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당국이 미결구금을 정보 제공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려 했고, 사건 당시 청구인이 구금된 것은 규정된 목적과 더불어 이면의 목적도 추구했음을 드러냈다. 동시에, 청구인을 미결구금 상태로 둔 사유는 이 사건이 발생하기 훨씬 전에 이미 사라진 것으로 보이므로 재판소는 제5조제3항 위반이라고 판단하였다. 문제가 된 사건의 모든 정황을 고려할 때, 재판소는 청구인이 구금된 주된 목적이 합리적인 의심에 근거한 범죄 수사라는 당초의 규정된 목적에서 이후 청구인으로부터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이면의 목적으로 변경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제5조제1항과 결합된 제18조가 위반되었다(§ 353).

86. *Miroslava Todorova v. Bulgaria*, 2021 사건에서 재판소는 최고사법평의회(SJC)와 행정부를 비판한 판사에 대한 보복성 징계 절차와 벌칙을 이유로 제10조와 결합된 제18조 위반이라고 판단하였다. 청구인은 불가리아 주요 전문 판사 협회인 불가리아판사연합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청구인은 회장 자격으로 투명성 증진, 행정부의 사법부 승진 개입 제한, 사법부 독립성 강화를 위한 다수의 공개 성명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최고사법평의회와 정부가 적대적인 반응을 보였다. 특히 내무부는 청구인의 판사 업무를 공개적으로 비판하였다. 최고사법평의회 감찰관은 청구인이 근무하던 소피아 시 법원에 감사 명령을 내렸다. 감찰관이 언론에 밝힌 바에 따르면, 이번 감사는 소피아 시법원(市法院) 신임 법원장(내무부 장관과

가까운 친구로 알려진 판사) 임명을 비판한 불가리아판사연합을 비롯한 판사들에 대한 대응 조치였다. 감사 결과에 따라 사건 처리 지연을 이유로 청구인에 대한 징계 절차가 진행되었다. 청구인은 1차로 2년 감봉을 받은 후 해고당했다. 최고행정법원에 상고한 결과 해고 처분은 2년의 직위 강등으로 대체되었다. 최고행정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지켜본 결과 최고사법평의회는 불가리아판사연합 및 기타 비정부기구의 비판적 성명을 일종의 전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재판소는 문제가 된 조치가 청구인의 명백한 직업 의무 위반을 근거로 공식적으로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청구인의 공개적인 발언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점도 인정하였다. 따라서 재판소가 보기에 이들은 정당한 목적과 더불어 최고사법평의회와 행정부를 비판한 청구인을 처벌하고 협박하는 이면의 목적을 동시에 추구하였다. 재판소는 상기와 같은 일련의 사건, 최고사법평의회가 불가리아판사연합 및 기타 비정부기구에 대해 명백히 적대적인 의견을 표명한 점, 청구인 해임 결정이 예외적으로 심각한 점을 고려하여 이면의 목적이 주된 목적이라고 최종 결론 내렸다. 재판소는 특히 불법적이지도 않고 법관 윤리 강령에 부합하지 않는 것도 아닌 활동을 한 청구인에게 보복성 징계 절차를 사용하려 한 의도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205-212).

87. *Juszczyszyn v. Poland*, 2022 사건은 폴란드의 사법부 독립성이 크게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한 연속적인 대규모 사법부 개혁이라는 구체적인 맥락에 관한 사안이다. 유럽연합사법재판소(CJEU)는 이와 관련하여 특히 개편된 국가사법평의회(NCJ)의 독립성 부족과 NCJ의 권고에 따라 임명된 판사의 지위 관련 주요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 CJEU 판결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청구판사는 새로운 NCJ의 권고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한 1심 판사가 독립성 요건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법무부장관 및 장관이 임명한 자들은 청구인에 대한 일련의 조치(항소법원 파견 종료 및 즉각적인 사법 업무 중단)를 취하였다. 폴란드 대법원 징계위원회는 결국 청구인에게 법관 직무 정직 및 감봉 처분을 내렸다. 재판소는 청구인의 정직이 폴란드 정부가 제기한 정당한 목적(타인의 권리와 자유 보호) 중 하나를 추구했다고 가정하려 하였다. 재판소는 청구인의 정직 이후 입법 및 법리적인 진전사항을 고려해보니 당국이 재구성된 NCJ의 참여로 임명된 판사의 신분에 이의를 제기하면 그렇게 하는 판사를 처벌할 수 있음을 실제로 보여주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재판소는 청구인을 처벌하고 설득하려는 이면의 목적이 주된 목적이라는 판단 하에 제8조와 결합된 제18조 위반이라고 보았다(*Juszczyszyn v. Poland*, 2022, §§ 322-337).

## 2. 특정 집단 표적 권력 남용 양상

88. *Azizov and Novruzlu v. Azerbaijan*, 2021 사건은 보복 기소와 형법 오용을 통해 정부 비판자, 시민사회 활동가, 인권 옹호자를 자의적으로 체포하고 구금하는 확립된 양상에 속한다(*Aliyev v. Azerbaijan*, 2018 참조). 이러한 사건들은 대부분 이면의 목적으로만 부과된 제한에 관한 것이었지만(이전 절 참조), *Azizov and Novruzlu v. Azerbaijan* 사건에서, 재판소는 청구인들의 구금에 정당한 목적이 있었다는 가정 하에 사건을 진행하였으며, 복수의 목적이 있다는 가능성에 근거하여 사건을 평가하였다. 일련의 평화적인 반정부 시위에 참여했던 청구인들은 “NIDA” NGO 회원으로, *Rashad Hasanov and Others v. Azerbaijan*, 2018 사건 청구인들과 동일한 혐의로 구금되었다. 이어서 동일한 형사 절차의 틀 안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소는 청구인들이 계속 구금된 주된 목적이 반정부 시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이유로 청구인들을 처벌하고 침묵하게 하려는 이면의 목적이라고 판단하였다. 재판소는 피청구국의 확립된 권력 남용 양상을 참조하여 법집행당국이 가장 중시한 NIDA와 회원들의 행동은 이들이 구체적인 표적이 되었음을 명백히 보여준다고 보았다(또한, *Ibrahimov and Mammadov v. Azerbaijan*, 2020 참조). 따라서 재판소는 제5조제3항과 결합된 제18조 위반이라고 결론지었다.

### 3. 주된 목적이 아닌 이면의 목적

89. 다음 사건들에서 재판소는 당국이 이면의 목적을 추구하긴 했지만 그것이 주된 목적이라고 판단할 수 없었다.

90. *Merabishvili v. Georgia* [GC], 2017 사건에서 재판소는 청구인의 체포와 미결구금은 정계에서 청구인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도 검토하였다. 재판소는 광범위한 정치적 맥락, 특히 청구인의 야당과 여당의 신랄한 반목, 청구인의 구금 시기 및 기소된 범죄의 성격을 고려할 때, 혐의 자체가 명백하게 정치적이지는 않더라도 혐의 뒤에 정치적 동기의 존재를 어느 정도 의심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형사 절차가 진행된 방식을 검토한 결과, 재판소는 청구인이 구금된 주된 목적이 청구인에 대한 형사 절차가 적절히 수행되도록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정치 참여를 방해하기 위한 것이란 점을 납득할 수 없었다(§§ 320-332).

91. *Khodorkovskiy and Lebedev v. Russia*, 2013 사건에서 청구인들은 부유한 사업가와 유코스 석유회사 고위 간부로 사기 및 탈세 혐의로 기소되었다. 청구인들은 기소의 정치적 동기를 주장하였다. 청구인들의 정치적 신분과 기타 사건 정황을 고려한 재판소는 정치 집단이나 정부 관리들이 청구인들의 기소를 밀어붙일 나름의 사유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절차 전반에 걸쳐 청구인들의 권리를 일부 제한하는 과정에서 일부 당국 또는 국가 관리들에게 “숨겨진 의제”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그러나 재판소는 청구인들의 “이 사건 전체가 정의의 희화화라는 과격한증 주장”에 동의할 수 없었다. 청구인들의 기소 뒤에 “부적절한 동기” 또는 “복합적인 의도”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그렇지 않았으면 청구인들이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하기에는 불충분하였다. 따라서 재판소는 주장된 이면의 목적이 주된 목적이 아니므로 제18조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906-908).

## IV. 증거 및 증명 문제

### A. 일반적인 증거 기준

92. 제18조에 따라 사건을 결정할 때 재판소는 더 이상 국가 당국의 일반적 선의 추정 또는 입증에 관한 특별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Khodorkovskiy v. Russia*, 2011, §§ 255-256 및 260; 및 *Khodorkovskiy and Lebedev v. Russia*, 2013, § 899 대조). 대신 이전 여러 사건에서 이 조항에 따라 적용했던 엄격한 기준이 아닌 입증에 대한 일반적인 접근 방식을 고수한다(*Merabishvili v. Georgia* [GC], 2017, § 310; *Navalnyy v. Russia* [GC], 2018, § 165; *Selahattin Demirtaş v. Turkey (no. 2)* [GC], 2020, § 422; 및 *Miroslava Todorova v. Bulgaria*, 2021, § 202; *Juszczyszyn v. Poland*, 2022, § 316).

93. 이러한 접근방식의 첫 번째 측면은 재판소가 자료의 출처에 관계없이 제출된 모든 자료를 검토하고 직권으로 자료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일방 또는 타방 당사자가 증명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재판소는 여러 차례에 걸쳐 주장을 증명할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다는 접근 방식을 엄격하게 따르는 것이 특히 청구인이 특정한 증거법적 어려움(evidentiary difficulties)에 직면한 경우에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하였다(*Merabishvili v. Georgia* [GC], 2017, § 311; *Ireland v. the United Kingdom*, 1978, §§ 160-161; *Cyprus v. Turkey* [GC], 2001, §§ 112-113 및 115; *Georgia v. Russia (I)* [GC], 2014, §§ 93 및 95; *Navalnyy v. Russia* [GC], 2018, § 165; *Korban v. Ukraine*, 2019, § 215; *Selahattin Demirtaş v. Turkey (no. 2)* [GC], 2020, § 422; *Miroslava Todorova v. Bulgaria*, 2021, § 202; *Juszczyszyn v. Poland*, 2022, § 316).

94. 재판소는 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증거에 의거하지만, 직원으로 청구인 또는 피청구국 정부에 제기된 주장을 입증하거나 반박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피청구국 정부가 그러한 요청에 응하지 않고 이에 대해 마땅한 설명도 하지 않는 경우 재판소가 추론할 수 있다(*Janowiec and Others v. Russia* [GC], 2013, § 202). 재판소 규칙의 규칙44C 제1항에 따라 이러한 추론을 전후관계 요소와 결합할 수 있다(*Merabishvili v. Georgia* [GC], 2017, § 312; *Navalnyy v. Russia* [GC], 2018, § 165; 및 *Selahattin Demirtaş v. Turkey (no. 2)* [GC], 2020, § 422).

95. 특히 국가가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하거나 반박할 수 있는 정보에 단독으로 접근할 수 있는 상황에서, 재판소에 제기된 소송에서 피청구국 정부의 행위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가능성은 이면의 목적이 주장되는 경우와 관련하여 특히 적절하다(기타 당국 중, *Timurtaş v. Turkey*, 2000, § 66; *Aktaş v. Turkey*, 2003, § 272; *El-Masri v. the former Yugoslav Republic of Macedonia* [GC], 2012, § 152; *Merabishvili v. Georgia* [GC], 2017, § 313; *Navalnyy v. Russia* [GC], 2018, § 165; 및 *Selahattin Demirtaş v. Turkey (no. 2)* [GC], 2020, § 422 참조).

96. 재판소 접근방식의 두 번째 측면은 재판소의 증명 기준에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이 기준은 같은 기준을 채택한 국가 법률 체계의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첫째, 충분히 강력하고 명확하며 일치하는 추론 또는 반박할 수 없는 유사한 사실 추정이 공존하는 경우 증명이 가능하다. 둘째, 결론을 내리기 위해 필요한 설득의 수준은 사실관계의 구체성, 제기된 주장의 성격 및 쟁점이 되는 협약 권리와 본질적으로 연결되어 있다(*Merabishvili v. Georgia* [GC], 2017, § 314; *Navalnyy v. Russia* [GC], 2018, § 165; *Korban v. Ukraine*, 2019, § 215; *Selahattin Demirtaş v. Turkey (no. 2)* [GC], 2020, § 422; *Miroslava Todorova v. Bulgaria*, 2021, § 202; *Juszczyszyn v. Poland*, 2022, § 316).

97. 재판소 접근방식의 세 번째 측면은 재판소가 증거능력과 타당성뿐만 아니라 재판소에 제출된 각 증거의 증명력도 자유롭게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증거를 평가할 때 재판소는 공식에 얽매이지 않으며, 사실관계와 당사자들의 제출물에서 도출할 수 있는 추론을 포함하여 모든 증거의 자유로운 평가가 뒷받침하는 결론을 채택한다(*Nachova and Others v. Bulgaria* [GC], 2005, § 147). 재판소는 일방이 직면할 수 있는 증거법적 어려움에 민감하다(*Merabishvili v. Georgia* [GC], 2017, § 315; *Navalnyy v. Russia* [GC], 2018, § 165; *Korban v. Ukraine*, 2019, § 215; *Selahattin Demirtaş v. Turkey (no. 2)* [GC], 2020, § 422; *Miroslava Todorova v. Bulgaria*, 2021, § 202; *Juszczyszyn v. Poland*, 2022, § 316).

98. 재판소는 제18조에 따른 청구와 관련하여 스스로 직접입증에만 국한하거나 그러한 주장에 대해 특별한 증명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Merabishvili v. Georgia* [GC], 2017, §§ 282 및 310; *Khodorkovskiy v. Russia*, 2011, § 260; *Dochnal v. Poland*, 2012, § 116; *Nastase v. Romania* (dec.), 2014, § 109; *AO Neftyanaya Kompaniya Yukos v. Russia*, 2011, § 603; *Bîrsan v. Romania* (dec.), 2016, § 73; *Khodorkovskiy and Lebedev v. Russia*, 2013, § 899; *Mammadli v. Azerbaijan*, 2018, § 98; *Rashad Hasanov and Others v. Azerbaijan*, 2018, § 120; *Aliyev v. Azerbaijan*, 2018, § 204; *Navalnyy v. Russia* [GC], 2018, § 165; *Korban v. Ukraine*, 2019, § 215; *Selahattin Demirtaş v. Turkey (no. 2)* [GC], 2020, § 422; *Ahmet Hüsrev Altan v. Turkey*, 2021, § 237 대조). 실제로, 사건의 상황에 따라, 당국이 그렇게 조치한 실제적인 이유(예: *Gusinskiy v. Russia*, 2004 사건의 서면 문서), 구체적인 단발성 사건(*Mirgadirov v. Azerbaijan and Turkey*, 2020, § 132) 또는 청구인이 진행 중인 형사 사건과 무관한 사건으로 심문받은 사실(*Ugulava v. Georgia*, 2023, § 125; *Kavala v. Turkey*, 2019, § 222)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특별히 유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지적한다고 하여 반드시 이면의 목적이 입증되는 것은 아니다.

99. 마지막으로, 이러한 맥락에서 정황 증거는 주요 사실관계에 관한 정보 또는 주요 사실관계에 관한 추론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전후 사실관계나 사건의 순서를 의미한다(*Ilgar Mammadov v. Azerbaijan*, 2014, § 142; *Rasul Jafarov v. Azerbaijan*, 2016, § 158; *Merabishvili v. Georgia* [GC], 2017, § 317; *Korban v. Ukraine*, 2019, § 215; *Selahattin Demirtaş v. Turkey (no. 2)* [GC], 2020, § 422; *Miroslava Todorova v. Bulgaria*, 2021, § 202; *Juszcyszyn v. Poland*, 2022, § 316).

100. 일련의 사건을 검토할 때 재판소는 전체적으로 살펴 구체적이고 개인적인 표적화를 가리키는 특정 양상이 드러나는지 분석할 수 있다(*Navalnyy v. Russia* [GC], 2018, § 167–170). 재판소는 동일 청구인이 이전에 제기한 관련 사건에서 내린 재판소의 판단 결과를 살펴볼 수도 있다. 사건 당시 논란이 된 관행이 협약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당국이 알고 있는지도 고려해야 할 타당한 요소이다(*Navalnyy v. Russia* [GC], 2018, § 171).

101. 재판소는 동일한 국가를 상대로 제기된 단일 사건 또는 일련의 유사한 사건을 전체적으로 맥락을 넓혀 볼 때 반대의 목소리(예: 정부 비판자, 야당 정치인), 시민사회 활동가 및/또는 인권 옹호자 등 구체적인 집단을 표적으로 삼는 권력 남용의 특정한 양상이 있는지 분석할 수 있다(*Selahattin Demirtaş v. Turkey (no. 2)* [GC], 2020, §§ 427–428; *Aliyev v. Azerbaijan*, 2018, § 223; *Natig Jafarov v. Azerbaijan*, 2019, §§ 64–65; *Ibrahimov and Mammadov v. Azerbaijan*, 2020, §§ 151–152; *Khadija Ismayilova v. Azerbaijan (no. 2)*, 2020, §§ 113–114; 및 *Yunusova and Yunusov v. Azerbaijan (no. 2)*, 2020, § 187–188; *Azizov and Novruzlu v. Azerbaijan*, 2021, § 76; *Democracy and Human Rights Resource Centre and Mustafayev v. Azerbaijan*, 2021, § 109).

102. 피청구국의 특정한 권력 남용 양상이 확인된 경우, 이 요소는 주어진 사건에 이면의 목적이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것과 관련된다(*Democracy and Human Rights Resource Centre and Mustafayev v. Azerbaijan*, 2021, § 109). 복수의 목적이 존재하는 상황이라면, 이는 해당 국가 당국이 추구하는 이면의 목적이 주된 목적임을 가리킬 수 있다(*Azizov and Novruzlu v. Azerbaijan*, 2021, § 77).

103. 국제 참관인, 비정부기구 또는 언론이 작성한 보고서 또는 진술, 기타 국내외 법원의 결정은 특히 사실관계를 밝히거나 재판소가 내린 판단을 입증하기 위해 고려되는 경우가 많다(*Baka v. Hungary* [GC], 2016, § 148; *Merabishvili v. Georgia* [GC], 2017, § 317; *Mammadli v. Azerbaijan*, 2018, § 95; *Rashad Hasanov and Others v. Azerbaijan*, 2018, § 118; *Aliyev v. Azerbaijan*, 2018, § 205; *Navalnyy v. Russia* [GC], 2018, § 165; *Korban v. Ukraine*, 2019, § 215; *Selahattin Demirtaş v. Turkey (no. 2)* [GC], 2020, §§ 422, 424 및 434; *Miroslava Todorova v. Bulgaria*, 2021, § 202; *Kutayev v. Russia*, 2023, § 139; *Juszcyszyn v. Poland*, 2022, § 316).

104. 재판소는 참조 기간에 발생한 관련 입법 동향도 분석할 수 있다(*Navalnyy v. Russia* [GC], 2018, § 172; *Aliyev v. Azerbaijan*, 2018, § 212; *Rasul Jafarov v. Azerbaijan*, 2016, § 159; 및 *Mammadli v. Azerbaijan*, 2018, § 99).

105. 주어진 사건의 특정한 사실 세부 사항이 이면의 목적을 알리는 지표로 해석될 수도 있고 사건 당시 정당, 대중 매체 및/또는 시민 사회가 그렇게 인식한 경우라면 재판소는 이를 기억하면서 제18조에 따른 청구인의 청구를 뒷받침하기 위해 청구인이 제기한 구체적인 변론의 근거가 충분한지 그 평가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Korban v. Ukraine*, 2019, §§ 218–224). 이러한 변론이 구체화된 정도는 재판소가 중요하게 분석하는 요소이다(*Mirgadirov v. Azerbaijan and Turkey*, 2020, § 133).

106. 정치적 절차와 판결 절차는 근본적으로 다르므로, 재판소는 상기 기준(*Merabishvili v. Georgia* [GC], 2017, §§ 310–317)과 구체적인 관련 사실관계를 자체 평가하여(*Kavala v. Turkey*, 2019, § 217; *Khodorkovskiy v. Russia*, 2011, § 259; *Ilgar Mammadov v.*

*Azerbaijan*, 2014, § 140; *Rasul Jafarov v. Azerbaijan*, 2016, § 155; *Sabuncu and Others v. Turkey*, 2020, § 250; *Şık v. Turkey (no. 2)*, 2020, § 209; *Ahmet Hüsrev Altan v. Turkey*, 2021, § 238; *Ugulava v. Georgia*, 2023, § 123 참조) “법적 의미의 증거”를 기반으로 결정을 내린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의거하는 요소들이 각각 또는 서로 결합하여 단일체로 볼 수 있는 것을 형성하는지 고려한다(*Sabuncu and Others v. Turkey*, 2020, § 256; *Şık v. Turkey (no. 2)*, 2020, § 218; *Ahmet Hüsrev Altan v. Turkey*, 2021, § 246).

107. 재판소는 정치적 고려 사항의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는 진술은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Akhalaia v. Georgia (dec.)*, 2022, § 66).

108. 문제가 된 제한이 정당한 목적 및/또는 필요한 정당화가 결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수범자에게 무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국내 법률 조항에 의거한 경우, 재판소는, 주어진 사건에서 그것이 적용되었다는 사실에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이면의 동기에 대한 증거를 찾을 수 없을 것이다(*Khodorkovskiy and Lebedev v. Russia (no. 2)*, 2020, §§ 624–625).

## B. 미결구금 및 형사기소 특별 사안

109. 형사 기소 상황에서 이면의 목적이 있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미결구금을 형사 기소와 분리시키기는 어렵다. 재판소는 미결구금 처분이 내려진 형사 소송에서 해당 미결구금을 분리할 수 있는 한 미결구금에 정치적 또는 기타 이면의 동기가 있다는 주장을 검토할 권능이 있음을 앞서 인정한 바 있다(*Navalnyy v. Russia (no. 2)*, 2019, § 85; *Ilgar Mammadov v. Azerbaijan* (침해 소송) [GC], 2019, § 185; *Lutsenko v. Ukraine*, 2012, § 108; *Tymoshenko v. Ukraine*, 2013, § 298; 및 *Tchankotadze v. Georgia*, 2016, § 114).

110. 동시에, 청구인이 부적절한 사유만으로 기소되어 미결구금에 처했다고 확인된 경우, 재판소가 이와 관련하여 제5조와 결합된 제18조 위반이라고 판단하면 청구인에 대한 유죄 판결 및 투옥을 포함하여 부당한 기소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후속 조치를 무효화한다(*Ilgar Mammadov v. Azerbaijan* (침해 소송) [GC], 2019, § 189).

111. 제5조와 결합된 제18조에 따라 주장이 제기된 경우, 재판소는 미결구금을 명령 및/또는 연장하는 법원 결정을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또한 문제가 된 형사 절차가 수행된 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Merabishvili v. Georgia* [GC], 2017, §§ 320 및 325).

## C. 정치적 목적 주장

112. 형사 기소의 맥락에서 정치적 목적이 있다는 주장을 검토할 때 재판소는 다음 요소를 고려한다.

- 청구인에 대한 형사 소송이 제기된 폭 넓은 정치적, 입법적 맥락(*Merabishvili v. Georgia* [GC], 2017, § 322; *Selahattin Demirtaş v. Turkey (no. 2)* [GC], 2020, §§ 426–431; *Khodorkovskiy v. Russia*, 2011, § 257; *Khodorkovskiy and Lebedev v. Russia*, 2013, § 901; *Nastase v. Romania (dec.)*, 2014, § 107; *Ilgar Mammadov v. Azerbaijan*, 2014, § 142; *Rasul Jafarov v. Azerbaijan*, 2016, §§ 159–161; *Mammadli v. Azerbaijan*, 2018, § 103; *Rashad Hasanov and Others v. Azerbaijan*, 2018, § 124; *Aliyev v. Azerbaijan*, 2018, §§ 212 및 214; *Navalnyy v. Russia* [GC], 2018, §§ 171–173; *Navalnyy v. Russia (no. 2)*, 2019, § 96; *Korban v. Ukraine*, 2019, § 222; *Natig Jafarov v. Azerbaijan*, 2019, § 67; *Ibrahimov and Mammadov v. Azerbaijan*, 2020, § 156; *Khadija Ismayilova v. Azerbaijan (no. 2)*, 2020, § 118; 및 *Yunusova and Yunusov v. Azerbaijan (no. 2)*, 2020, § 191–193; *Sabuncu and Others v. Turkey*, 2020, § 253; *Şık v. Turkey (no. 2)*, 2020, § 212;

- Ahmet Hüsrev Altan v. Turkey*, 2021, § 241; *Azizov and Novruzlu v. Azerbaijan*, 2021, § 76; *Kutayev v. Russia*, 2023, § 138)
- 특히 다음과 같이 검찰 및 사법 당국 자체가 이면의 동기로 움직였는지 여부(*Tchankotadze v. Georgia*, 2016, § 114; *Merabishvili v. Georgia* [GC], 2017, § 323; 및 *Batiashvili v. Georgia*, 2019, § 102)
    - 특정 사건에서 해당 당국이 관련 개인/조직을 구체적인 표적으로 삼을 수 있는 공개 성명(*Ilgar Mammadov v. Azerbaijan*, 2014, § 142; *Rashad Hasanov and Others v. Azerbaijan*, 2018, §§ 122–124; *Ibrahimov and Mammadov v. Azerbaijan*, 2020, § 155; *Azizov and Novruzlu v. Azerbaijan*, 2021, §§ 71–73)
    - 특정한 정치 풍토는 청구인 및 동일 집단·범주에 속한 다른 사람들과 관련하여 국내 법원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음. 이러한 환경의 존재를 입증하기 위해 피청구국의 전체 법적 장치가 체계적으로 오용되고 사법 당국이 대상 집단 또는 범주에 관한 모든 사건에서 계속해서 악의를 가지고 협약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며 행동한다고 증명할 필요는 없음(*Selahattin Demirtaş v. Turkey (no. 2)* [GC], 2020, §§ 434 및 436)
  - 행정당국으로부터 법원의 독립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증거 존재 여부(*Merabishvili v. Georgia* [GC], 2017, § 324; 및 *Batiashvili v. Georgia*, 2019, § 102). 이와 관련하여 재판소는 법을 통한 민주주의 유럽위원회(베니스 위원회)의 관련 조사 결과에 상당한 비중을 두며 그 예로는 사법부의 주요 자치기구 구성, 임명 감독, 징계 조치, 판사 및 검사 해임 관련 조사 결과가 있음(*Selahattin Demirtaş v. Turkey (no. 2)* [GC], 2020, § 434)
  - 특히 다음과 같이 청구인의 체포가 이루어진 시기와 방식 및/또는 형사 절차나 미결구금에 대한 사법 심리가 수행된 방식(*Merabishvili v. Georgia* [GC], 2017, § 325; *Navalnyy v. Russia* [GC], 2018, §§ 167–168; *Batiashvili v. Georgia*, 2019, § 102; *Korban v. Ukraine*, 2019, § 218; *Natig Jafarov v. Azerbaijan*, 2019, § 68; *Kavala v. Turkey*, 2019, §§ 222–229; *Ibrahimov and Mammadov v. Azerbaijan*, 2020, § 153; *Selahattin Demirtaş v. Turkey (no. 2)* [GC], 2020, §§ 429–433; *Azizov and Novruzlu v. Azerbaijan*, 2021, § 73; *Kutayev v. Russia*, 2023, § 139)
    - 청구인이 피소된 행위와 청구인에 대한 형사 조사가 개시된 시점 또는 청구인의 구금 사이에 과도한 시간 경과 여부(*Kavala v. Turkey*, 2019, § 228; *Sabuncu and Others v. Turkey*, 2020, § 254; *Şık v. Turkey (no. 2)*, 2020, § 213; *Ahmet Hüsrev Altan v. Turkey*, 2021, § 242; *Ugulava v. Georgia*, 2023, § 126)
    - 고위 공무원의 설명할 수 없는 개입(*Kutayev v. Russia*, 2023, § 140) 등 청구인 사건을 특별 대우하였는지 여부(*Rashad Hasanov and Others v. Azerbaijan*, 2018, § 124)
    - 강압으로 얻은 자백이 형사 절차에 사용되었는지 여부(*Kutayev v. Russia*, 2023, § 139)
  - 청구인에 대한 혐의가 진실하고 제 5 조제 1 항제(c)호가 의미하는 “합리적인 의심”에 해당하는지 여부(*Khodorkovskiy v. Russia*, 2011, § 258; *Khodorkovskiy and Lebedev v. Russia*, 2013, § 908; *Dochnal v. Poland*, 2012, § 111; *Merabishvili v. Georgia* [GC], 2017, § 318; *Korban v. Ukraine*, 2019, § 216; *Aliyev v. Azerbaijan*, 2018, § 209; *Natig Jafarov v. Azerbaijan*, 2019, § 68; *Kavala v. Turkey*, 2019, § 218; *Ibrahimov and Mammadov v. Azerbaijan*, 2020, § 154; 및 *Khadija Ismayilova v. Azerbaijan (no. 2)*, 2020, § 111; *Selahattin Demirtaş v. Turkey (no. 2)* [GC], 2020, §§ 338–339 및 423; *Sabuncu and Others v. Turkey*, 2020, § 251; *Şık v. Turkey (no. 2)*, 2020, § 217; *Ahmet Hüsrev Altan v. Turkey*,

2021, § 239; *Ugulava v. Georgia*, 2023, § 125). 해당 혐의가 국내법에 따라 범죄로 간주되는 행위로 합리적으로 볼 수 없다는 사실에 근거한 경우, 특히 청구인의 협약상 권리 행사와 관련된 경우, 그러한 상황은 특히 제 18 조에 따른 청구의 맥락과 관련이 있으며 이면의 목적이 있다는 주장을 입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Kavala v. Turkey*, 2019, §§ 220 및 224)

- 청구인에 대한 혐의가 청구인의 정치 활동 또는 일반적인 형법 위반과 관련되는지 여부(*Khodorkovskiy and Lebedev v. Russia*, 2013, § 906; *Merabishvili v. Georgia* [GC], 2017, § 320; *Ugulava v. Georgia*, 2023, § 130)
- 국내 사법부의 결정이 합리적이며 국내법의 관련 조항에 근거하였는지 여부(*Nastase v. Romania* (dec.), 2014, § 107; *Azizov and Novruzlu v. Azerbaijan*, 2021, § 78)
- 국내 법원이 관련 실체적 조항에 따라 청구인의 청구를 면밀히 조사하였는지 여부(*Sabuncu and Others v. Turkey*, 2020, § 256; *Şık v. Turkey (no. 2)*, 2020, § 217; *Ahmet Hüsrev Altan v. Turkey*, 2021, § 245)
- 청구인에게 부과된 예방 조치 및 수반되는 제한이 형사사법의 과업목표와 충분히 연관되어 있으며 그 기간이 해당 범죄 혐의의 성격에 적절해 보이는지 여부(*Navalnyy v. Russia (no. 2)*, 2019, § 95)

113. 상기 요소들은 징계 절차 상황에도 타당하다(*Miroslava Todorova v. Bulgaria*, 2021, §§ 205–213; *Juszczyszyn v. Poland*, 2022, §§ 322–337). 사건 정황상 그러한 절차 및 부과된 제재가 이면의 동기로 인해 손상된 것으로 보이는 경우, 재판소는 청구인의 주장에 비추어 국내 사법 심사가 해당 사안을 적절히 다루었는지 면밀히 검토할 것이다(*Miroslava Todorova v. Bulgaria*, 2021, § 212).

114. 용의자의 정치적 반대자나 사업 경쟁자가 유죄 판결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다 하여도, 해당 혐의가 진짜인 경우 당국의 용의자 기소를 막아서는 안 된다. 즉, 정치적 신분이 높다고 하여도 면책 특권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Khodorkovskiy v. Russia*, 2011, § 258; *Khodorkovskiy and Lebedev v. Russia*, 2013, § 903; *Ugulava v. Georgia*, 2023, § 128).

115. 정권 교체 후 정치인과 고위 공무원에 대한 형사 기소가 시작되면 해당 정치인이나 정당을 제거하거나 해를 끼치고 싶은 것일 수도 있지만, 집권 기간 동안 책임을 물을 수 없었던 이전 정부의 잘못된 행위를 처리하려는 바람이 반영된 것일 수도 있다(*Merabishvili v. Georgia* [GC], 2017, § 323; *Khodorkovskiy and Lebedev v. Russia*, 2013, § 903).

116. 선거운동이나 국민투표 기간 중이라도 정치인이 형사 기소를 당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피선거권 침해가 아니며, 추구하는 방향목표가 정치적 토론 제한(및 *Selahattin Demirtaş v. Turkey (no. 2)* [GC], 2020, § 424; *Uspaskich v. Lithuania*, 2016, §§ 90–100)임을 가리키는 것도 아니다. 협약에 따라 형사 기소를 받지 않을 권리는 없다(*Merabishvili v. Georgia* [GC], 2017, § 320).

117. 청구인이 선거 후보로 나서지 않는다는 사실은 청구인에게 부과된 제한과 다가오는 선거 사이의 연결 가능성에 대한 변론의 설득력을 떨어뜨린다(*Ugulava v. Georgia*, 2023, § 126).

118. 재판소는 청구인의 구체적인 신분과 활동을 고려한다(*Navalnyy v. Russia* [GC], 2018, § 174; *Aliyev v. Azerbaijan*, 2018, §§ 208; *Kavala v. Turkey*, 2019, § 231; *Natig Jafarov v. Azerbaijan*, 2019, § 66; *Ibrahimov and Mammadov v. Azerbaijan*, 2020, § 153; *Khadija Ismayilova v. Azerbaijan (no. 2)*, 2020, § 115; *Yunusova and Yunusov v. Azerbaijan (no. 2)*, 2020, § 189; 및 *Khodorkovskiy v. Russia*, 2011, § 257; *Selahattin Demirtaş v. Turkey (no. 2)* [GC], 2020, § 424; *Azizov and Novruzlu v. Azerbaijan*, 2021, § 73; *Kutayev v. Russia*, 2023, § 138). 동시에, 야당 지도자 또는 공무원 같은 특별한 정치적 신분이

부재하여도 논란이 된 조치의 배후에 정치적 동기가 존재할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는다. 재판소는 선거에 비판적이거나 정부에 반대하는 시위에 연루된 유명 시민사회 활동가 및 비정부기구 지도자의 구금과 관련된 사건에서 정치적 목적을 인정한 바 있다(*Mammadli v. Azerbaijan*, 2018, § 103, 및 *Rashad Hasanov and Others v. Azerbaijan*, 2018, § 124).

119. 법관에게 부과된 징계 제재 및/또는 기타 조치와 관련하여 제18조에 따른 청구가 제기된 경우, 재판소는 사법 독립을 고려하고 사법부의 독립과 자율성을 위협할 수 있는 수단으로부터 사법부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는 특히 판사가 내린 사법적 결정에 대하여 민사 또는 징계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와 관련된다. 재판소는 이러한 경우 징계 제도가 정당한 목적에서 벗어나 사법적 결정에 대한 정치적 통제나 판사에 대한 압력 행사로 이용될 수 있는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다(*Juszczyszyn v. Poland*, 2022, §§ 327 및 333-335).

120. 청구인의 특정 신분과 활동은 어떤 맥락에서는 청구인을 표적으로 삼은 수단 배후의 정치적 동기를 암시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청구인이 이면의 목적에 대한 주장을 충분할 정도로 구체화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다. 재판소는 청구인의 견해로는 당국이 보복 또는 박해로 대응할 수 있는 자신의 구체적인 행동(예: 연설, 글)을 청구인이 명시하지 않은 경우 그러한 주장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Mirgadirov v. Azerbaijan and Turkey*, 2020, § 133).

121. 정치인과 정부 관리의 공개 발언은 경우에 따라 사법 결정의 배후에 이면의 목적이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으며(*Sabuncu and Others v. Turkey*, 2020, § 255; *Şık v. Turkey (no. 2)*, 2020, § 214; *Kutayev v. Russia*, 2023, § 140; *Khadija Ismayilova v. Azerbaijan (no. 2)*, 2020, § 117), 특히 법원이 행정 당국으로부터 충분히 독립적이지 않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 그러하다(*Tchankotadze v. Georgia*, 2016, § 114; *Merabishvili v. Georgia* [GC], 2017, § 324; *Batiashvili v. Georgia*, 2019, § 102; *Ugulava v. Georgia*, 2023, § 127; *Juszczyszyn v. Poland*, 2022, §§ 322-327).

122. 검찰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다른 요소와 함께 볼 때, 이러한 진술은 특히 그러한 진술과 문제가 된 제한 사이에 시간적으로 밀접한 연결이 있거나(*Selahattin Demirtaş v. Turkey (no. 2)* [GC], 2020, §§ 424-426 및 432-434; *Khadija Ismayilova v. Azerbaijan (no. 2)*, 2020, § 117; *Ugulava v. Georgia*, 2023, § 127 대조) 혐의의 문구와 문제가 된 진술의 내용 간 상관관계가 있는 경우(*Kavala v. Turkey*, 2019, §§ 229-230) 이면의 목적에 대한 주장을 확증할 수 있다.

123. 반대로, 국내 법원이 그러한 진술에 영향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는 경우, 후자는 재판소의 분석에서 더 적은 비중을 차지할 것이다(*Sabuncu and Others v. Turkey*, 2020, § 255; *Şık v. Turkey (no. 2)*, 2020, § 214 참조).

124. 이러한 맥락에서 재판소는 청구인이 문제가 된 진술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는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도 검토할 것이다. 이러한 진술이 주어진 조직과 그 정책에 관한 것일 경우 재판소는 그것이 반드시 해당 조직의 피용인과 관리자를 향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한 신문사 및 그 신문사 언론인과 관련하여, *Sabuncu and Others v. Turkey*, 2020, § 255; *Şık v. Turkey (no. 2)*, 2020, § 214 참조).

125. 형사 기소 및 구금은 청구인이 공개적으로 자신의 견해를 표현하려는 의지를 위축시키고 언론인, 야당 정치인 등 청구인의 동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자기 검열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를 발견했다는 것만으로는 제18조 위반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기에 불충분하다(*Sabuncu and Others v. Turkey*, 2020, § 256; *Şık v. Turkey (no. 2)*, 2020, § 216; *Ahmet Hüsrev Altan v. Turkey*, 2021, § 244).

126. 범죄인 인도를 판단하는 법원은 본질적으로 미래의 위험을 평가하는 반면, 재판소는 과거의 사실에 관심을 갖기 때문에 결정적이지 않은 전후관계 증거에 대한 각자의 평가에

영향을 미치므로, 국내 판결이 범죄인 인도를 거부한다 하더라도 범죄인 인도의 배후에 정치적 동기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재판소의 평가가 이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Merabishvili v. Georgia* [GC], 2017, § 330).

## D. 제18조 위반 판단 증거

### 1. 직접 증거

127. 다음 사건에서 재판소는 이면의 목적에 대한 직접적인 서면 증거를 바탕으로 제5조와 결합된 제18조 위반에 대한 판단을 내렸다. 이러한 사건들은 확립된 권력 남용 양상 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

128. *Gusinskiy v. Russia*, 2004 사건에서 청구인은 부유한 사업가로 청구인의 미디어 회사를 국영 기업에 매각하라는 압박하기 위해 기소되고 미결구금되었다. 청구인의 기소 취하를 회사 매각과 연결하는 정부 장관이 승인한 서면 합의서와 청구인에 대한 형사 소송 중단 결정의 조건에서 직접 입증되었으며, 피청구인 정부는 이러한 연결을 부인하려 하지 않았다(§§ 73-78).

129. *Lutsenko v. Ukraine*, 2012 사건에서 재판소는 수사관이 청구인의 미결구금을 요청하며 청구인이 언론과의 대화로 여론을 왜곡하고 검찰 당국의 신뢰를 떨어뜨리며 다가오는 청구인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변론에 의거하였다. 재판소는 이 구금으로 자신의 무죄를 공개적으로 주장한 청구인을 처벌하려 하였음을 보여준다고 판단하였다(§§ 26 및 108-109).

130. *Tymoshenko v. Ukraine*, 2013 사건에서 재판소는 청구인을 미결구금하라는 검사의 요청 및 청구인이 법원에 무례하고 법정 심리 중 고의적인 방해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처벌할 목적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해당 법원 명령 속 진술에 의거하였다(§§ 30-31 및 299).

### 2. 정황 증거

131. 다음 사건들에서 재판소는 이면의 목적에 대한 전후관계 증거에 근거하여 제5조 및 제8조 또는 제11조와 결합된 제18조 위반이라고 판단하였다.

#### a. 확립된 권력 남용 양상과 무관한 사건

132. *Cebotari v. Moldova*, 2007 사건에서 재판소는 국영 기업 대표가 조작된 혐의로 미결구금된 것은 그와 연관된 민간 기업 오페르타 플러스의 재판소 제소를 방해하려는 압박임을 확인하였다. 재판소는 객관적인 관찰자는 사건 자료를 보고 청구인이 구금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고 합리적으로 믿을 수 없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이러한 판단을 내렸다. 재판소는 특히 다음과 같은 사건의 맥락(§§ 50-53)에도 영향을 받았다.

- 기업의 청원권 침해에 관한 *Oferta Plus S.R.L. v. Moldova*, 2006 사건에서 재판소 판단 결과(§§ 137-143)
- 청구인에 대한 혐의가 오페르타 플러스의 최고 경영자에 대한 혐의와 분리될 수 없으며 오페르타 플러스가 재판소에 제소한 주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Oferta Plus S.R.L. v. Moldova*, 2006, § 137)
- 청구인과 오페르타 플러스 최고경영자에 대한 형사 소송과 구금이 같은 시기에 이루어졌고, 동일한 수사관이 개시 및 처리하였으며, 유사한 용어로 표현하였다는 사실

- 오페르타 플러스가 재판소에 제소한 사실을 몰도바 정부가 통보받은 후 최초로 기소되었고, 이후 중단되었다가 본 사건이 정부에 전달된 직후 재개되었다는 사실(*Oferta Plus S.R.L. v. Moldova*, 2006, § 142)

133. *Merabishvili v. Georgia* [GC], 2017 사건에서 재판소는 청구인이 미결구금되는 과정에서 주된 목적이 협약에 부합하는 목적에서 이면의 목적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제5조제1항과 결합된 제18조 위반으로 판단하였다. 이는 전직 총리의 사망과 전직 대통령의 재정 활동에 대해 검사장이 심문하려고 청구인을 감방에서 은밀히 데리고 나간 일에서 잘 드러난다.

134. 재판소가 이러한 결론에 이르게 된 몇 가지 요인은 그 당시 청구인을 미결구금 상태로 둘 이유가 사라진 것으로 보였고, 여러 범죄 수사 대상이던 전 대통령이 임기 종료 후 조지아를 막 떠났으며, 전 총리 사망 수사는 큰 진전이 없어 보인 것과 관련된다.

135. 다른 요인들은 두 사람에 관한 질문이 당국에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정부는 대재판부 심리에서 이 점에 대해 청구인이 답해야 할 “거대한 질문”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진술했다. 검찰 당국은 사법 통제 없이 언제든지 청구인에 대한 모든 기소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고, 청구인이 요청된 정보를 제공하면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법원은 청구인에 대한 형사 절차를 중단해야 했을 것이다. 청구인은 한밤중에 수행된 비밀 작전으로 은밀하면서도 변칙적으로 보이는 방식으로 연행되어 3주 전 자신의 직책에 임명된 한 개인을 만났다. 이에 대한 당국의 초기 반응은 단호한 부인이었으며, 그 이후 조사와 수사는 주요 주인공들을 초기 조사 과정이 아니라 사건 발생 후 약 3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면담하고 사건의 결정적인 증거인 교도소 감시 카메라 영상은 복구되지 않는 등 당국이 이 문제가 드러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다고 짐작하게 하는 일련의 누락이 발생하여 손상되었다(*Merabishvili v. Georgia* [GC], 2017, §§ 352-353).

136. *Kavala v. Turkey*, 2019 사건에서 재판소는 청구인의 미결구금이 인권운동가이자 비정부기구 활동가인 그를 침묵하게 하려는 이면의 목적으로만 활용되었다는 점에서 제18조 위반이라고 판단하였다. 입증은 사건별 사실관계, 특히 체포 시기와 혐의를 종합하여 이루어졌다. 우선, 재판소는 청구인이 구금된 근거가 된 사건과 법원의 구금 결정 간 상당한 기간(대규모 시위 발생 후 4년 이상, 쿠데타 시도 후 1년 이상) 동안 그럴듯한 설명이 없었다는 점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보았다. 특히 검사가 의거한 증거의 대부분이 체포일 훨씬 전에 이미 수집된 점에 주목해야 한다. 둘째, 논란이 된 조치는 혐의 행위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에 근거한 합리적인 의심으로 정당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소는 제5조제1항을 단독으로 위반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더해 특히 제18조의 맥락과 특히 관련하여, 이러한 조치는 본질적으로 국내법에 따라 범죄행위로 합리적으로 간주할 수 없는 사실에 근거한 것이었으며 주로 협약 제10조 및 제11조가 보장하는 권리의 행사와 관련되었다. 기소장안(案)은 인권 옹호자와 비정부기구 지도자의 일상적이고 합법적인 활동을 언급하지만 반란을 촉발했다는 혐의와의 관련성은 명시하지 않았다. 또한 청구인이 형사 책임을 지게 된 근거가 된 사실관계나 행동을 분명히 명시하지도 않았다. 셋째, 수사 당국은 처음부터 청구인이 상기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추정에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 특히 경찰 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은 관련 없는 질문을 많이 받았다. 청구인은 공식적으로 기소되기 전 1년 이상 미결구금 상태였으며, 그 동안 별다른 수사 행위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혐의의 문구와 약 3개월 전 대통령이 청구인을 공개 비난한 것 간에 상관관계가 있었다. 상기 모든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튀르키예 내 인권 옹호자들을 표적으로 삼은 광범위한 탄압 활동에 대한 국제적인 우려를 고려하여 재판소는 이면의 목적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정도로 검찰의 신뢰성이 훼손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논란이 된 조치가 청구인 또는 인권운동가/비정부기구 활동가들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본질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청구인들을 침묵하게 한다는 이면의 목적은 특히 인권운동가와 비정부기구의 특별한 역할에 비추어 볼 때 상당히 심각하였다(§§ 220-232).

137. *Miroslava Todorova v. Bulgaria*, 2021 사건에서 판사인 청구인은 사건 처리의 심각한 지연을 이유로 징계 조치되었다. 그러나 재판소는 이러한 조치가 청구인이 불가리아판사연합의 회장 자격으로 행한 공개 발언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고 판단하였다. 문제가 된 징계에 정당한 목적(즉, 사법 제도의 적절한 기능 보장)가 존재하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은 재판소는 청구인을 처벌하고 협박하려는 이면의 목적도 추구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실제로, 징계 절차는 불가리아판사연합과 행정부 간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시작되었다. 사법부 내부 승진에 대한 행정부의 개입을 우려한 불가리아판사연합의 비판은 정부와 최고사법평의회(이하 '평의회')의 적대적인 반응을 부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고사법평의회 감찰관이 공개적으로 밝힌 대로 청구인에 대한 징계 절차의 발단이 된 감사는 소피아 시법원 신임 법원장(내무부 장관과 가까운 친구로 알려진 판사) 임명을 불가리아판사연합을 비롯한 판사들이 비판한 것에 대한 대응이었다. 나아가, 내무부 장관은 청구인을 인신 공격하였다.

138. 복수의 목적을 마주한 재판소는 이면의 목적이 주된 목적이냐는 질문으로 전환하였다. 우선, 재판소는 상기한 일련의 사건을 고려할 때 감사를 실시한 주된 이유가 청구인의 처벌을 바랐기 때문이라고 판단하였다. 실제로 감사는 불가리아판사연합의 비판 직후 실시되었고, 그 중 일부는 비판의 표적인 판사들이 촉구하였다. 둘째, 재판소는 청구인 해임 결정이 내려지고 며칠 후 열린 최고사법평의회 회의에서 불가리아판사연합 및 기타 비정부기구에 대해 명백히 적대적인 의견이 표명되었다고 지적하였다. 최고행정법원도 언급하였듯이, 최고사법평의회는 불가리아판사연합의 비판을 일종의 전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셋째, 재판소는 청구인 해임의 예외적인 심각성과 비례성 상실에 치중하였다. 나아가, 그러한 제재를 내리면서 최고사법평의회가 청구인의 징계 책임이 시효가 다하는 것과 관련하여 지연을 고려하였다는 점은 주목할 만했다. 결국, 최고행정법원이 청구인의 해임을 취소하였지만 이면의 목적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무시하였다. 최고사법평의회가 부과한 최종 제재(직위 강등 2년)에 대한 사법 심사 역시 청구인의 의견과 활동에 보복성 징계 절차를 사용한 것이 불법적이거나 법관 윤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루지 못했다. 이를 근거로 재판소는 확인된 이면의 목적이 주된 목적이어서 제10조와 결합된 제18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Miroslava Todorova v. Bulgaria*, 2021, §§ 205-213).

139. *Juszczyszyn v. Poland*, 2022 사건에서 재판소는 청구판사에 대한 징계성 정직이 정부가 주장하는 정당한 목적이 아니라 폴란드 사법부의 광범위한 개혁의 맥락에서 판사 임명의 적법성을 사법 명령을 통해 검증하고 청구인 판사를 제재하고 설득하려는 이면의 목적을 주로 추구했다고 판단하였다. 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고려사항을 바탕으로 이러한 개혁과 관련된 사건에서 처음으로 제18조 위반을 판단하였다. 우선, 일반적인 맥락으로 일련의 사법 개혁이 사법부 독립의 실질적 약화를 거뒀고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생생하게 알 수 있었다. 둘째, 청구인이 사법 명령을 내린 직후 이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으로 법무부 장관과 그가 임명한 사람들이 청구인에 대해 일련의 조치를 취하였으며, 법무부 장관은 청구인의 명령이 “폴란드 사법부의 무정부화 및 판사의 권력 남용”에 해당한다고 공개적으로 언명하였다. 셋째, 정직 결정은 독립성이 결여된 기구가 내린 것으로 본질적으로 사법 독립 원칙에 부합하지 않으며 명백히 불합리하다. 이는 유럽사법재판소(CJEU)와 폴란드 대법원의 근본적인 판단을 무시한 것이다. 넷째, 재판소는 청구인에 대한 소송이 진행됨과 동시에 법관 임명에 의문을 제기하는 행위를 포함하여 법관에 대한 새로운 징계 사유를 도입한 법안이 채택된 것, 법관이 임용된 방식에 근거하여 법관의 재판권을 심사할 가능성을 배제하는 헌법재판소의 새로운 판결을 고려하였다. 요약하면, 사건이 이렇게 전개되어 그러한 행동을 하면 판사도 제재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실증하려는 당국의 의지를 알 수 있었으며, 따라서 청구인의 정직 처분의 배후에 있는 이면의 목적이 우세한 목적이라는 것을 가리킨다. 이러한 결론을 내리는 과정에서 재판소는 베니스 위원회의 관련 의견, *Commission v. Poland (판사 징계 제도)* 사건에서 CJEU의 판결 및 PACE의 결의안에도 의거하였다.

140. *Kutayev v. Russia*, 2023 사건에서 재판소는 청구인의 구금이 체첸 대통령이 지정한 날이 아닌 다른 날에 1944년 강제 추방 희생자 추모 회의를 조직하고 대통령과의 회의 참석을

거부한 청구인을 처벌한다는 이면의 목적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입증은 사건의 관련 정황과 전후관계 요소를 병치하여 이루어졌다. 첫째, 청구인은 대통령과의 면담에 참석하지 않은 다음 날 체포되었다. 실제로 대통령은 그 직후 신청인의 체포와 기념 회의 일정을 명시적으로 연결하는 공개 성명을 발표하였다. 둘째, 청구인의 체포는 자의적이었으며 경찰과 수사관 측에서 명백히 악의의 요소가 있었다. 셋째, 청구인의 체포에 고위 관료들이 연루되었고, 청구인의 형사 사건과 관련하여 어떠한 이유로도 설명할 수 없이 이렇게 연루된 것은 체첸 정부 최고위층에게 이 사건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명백하게 증명한다. 넷째, 청구인을 고문하여 제3조를 위반하며 얻어낸 자백은 이후 유죄 판결에 이용되었다. 다섯째, 청구인은 인권운동가이며, 이 사건은 체첸에서 일어나는 인권운동가에 대한 협박과 통상적인 단속의 맥락에서 보아야 하며, 유럽의회, PACE 및 다수의 비정부기구가 해당 사안을 제기하였다. 이에 따라 재판소는 협약 제5조제1항과 결합된 제18조 위반으로 판단하였다(§§ 137-141).

## b. 특정 개인 표적화 암시 양상

141. *Navalnyy v. Russia* [GC], 2018 사건은 러시아 대표 야당 인사인 청구인이 허가되지 않았지만 평화적인 대중 집회 참여를 사유로 체포되어 기소된 7건의 사례에 관한 사안이다. 이 중 2건을 중점적으로 분석한 결과, 재판소는 제5조와 제11조가 결합된 제18조 위반으로 판단하며 문제가 된 제한이 제11조의 실제적 조항에 따른 정당한 목적을 추구하지 않고 정치적 다원주의 억압이라는 이면의 목적만을 추구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판단은 특히 전체적으로 볼 때 사례의 순서와 양상 및 맥락을 넓혀 사건 당시 러시아 당국이 야당의 정치 활동을 통제하려 시도한 것에 근거하였다.

142. 우선 청구인은 비교적 짧은 기간(2년) 동안 7차례에 걸쳐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체포되는 등 일련의 체포 과정에서 일정한 양상이 드러났다. 체포의 구실은 점점 더 신빙성이 떨어지는 반면, 청구인이 야기한 잠재적 또는 실제적 무질서의 정도는 감소하였다. 특히, 처음 네 번의 사례에서는 청구인이 집회 지도자 중 한 명이었지만, 이후 집회에서는 이렇다 할 역할을 하지 않았다. 이런 양상은 청구인에게 취한 조치의 주된 목적이 조사 기간에 실제로 변경되었음을 시사한다.

143. 둘째, 전후관계를 넓혀 보면, 당국은 7차례에 걸친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문제가 된 관행이 협약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점점 더 인식하게 되었다(특히 *Navalnyy and Yashin v. Russia* 사건의 이전 시위와 *Navalnyy and Ofitserov v. Russia* 및 *Navalnyy v. Russia* 사건 청구인을 대상으로 병행된 형사 절차와 관련하여 재판소의 유사한 판단 참조).

144. 셋째, 야당 지도자인 청구인과 다른 정치 활동가들의 행동에 당국이 점점 더 가차 없이 대응하고 있었고, 실제로 정치적 성격의 대중 집회에 점점 더 가차 없이 접근하고 있었다는 견해를 뒷받침할 “수렴되는 정황증거”가 있었다. 특히, *Lashmankin and Others v. Russia* 사건 이후 검토 및 채택된 입법적 변화는 공공 행사 진행 시 절차 위반에 대한 책임을 높이고 확대하여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경향이 지속됨을 나타내며, 이에 대해 여러 유럽평의회 기구들이 우려를 표하였다.

145. 넷째, 재판소는 주장된 이면의 목적의 성격 및 비난 가능성의 정도를 고려할 때 상당히 심각하다고 판단하였다. 실제로, 중요한 공적 기능을 수행하려 헌신한 야당 정치인을 표적으로 한 문제의 제한은 청구인 개인, 동료 활동가 및 지지자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본질에 영향을 줄 수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정치적 다원주의 억압을 겨냥하였다(§§ 167-175).

146. *Navalnyy v. Russia (no. 2)*, 2019 사건에서 재판소는 *Navalnyy v. Russia* [GC], 2018 사건과 동일한 전후관계 증거에 의거하여 상기 대재판부 판결에서 쟁점이 된 7건의 연속 사례에서 마지막 체포 직후 부과된 청구인의 가택 연금과 부수적인 통신 수단 접근 금지를 검토하였다. 문제가 된 수단도 형사사법의 과업목표와 점점 더 모순되고 연결성이 결여되어

재판소는 제5조 및 제10조를 각각 단독으로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그 기간(10개월)은 해당 형사 혐의의 성격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였으며, 특히 유관 형사 사건의 주요 피고인에 대해서는 이러한 수단을 적용하지 않았다. 상기 대재판부 판결 결과에 따라, 재판소는 이러한 수단이 정치적 다원주의를 억압하려는 이면의 목적만을 추구한 것으로 협약 제5조와 결합된 제18조 위반이라고 결론 내렸다.

### c. 특정 집단 표적 권력 남용 양상

147. *Selahattin Demirtaş v. Turkey (no. 2)* [GC], 2020 사건에서 재판소는 연설 및 합법 모임 참여 관련 혐의로 야당 의원을 장기간 미결구금 상태로 둔 것은 협약에 규정된 목적이 없으며 다원주의를 억압하고 정치 토론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이면의 동기만을 추구하였다고 판단했다. 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요소에 근거하여 결론을 내렸다. 테러 공격 및 심각한 폭력 이후 “쿠르드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이 결렬된 국내의 전후관계를 특히 고려하였다. 우선, 재판소는 상기 사안에 대한 여야 간 논란으로 긴장된 정치 풍토를 살피는 한편 청구인의 정당이 성공을 거두어 의회에서 과반수를 잃은 집권당의 선거 결과에도 주목하였다. 둘째, 재판소는 시간적으로 밀접하게 연결된 이어지는 사건의 연속에 초점을 두었다. 튀르키예 대통령은 공개 성명에서 청구인을 비롯한 청구인 정당 지도자들이 테러 행위에 대해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선언하였고, 이러한 사안에 대한 그들의 연설은 반역 및 위헌 범죄에 해당한다고 선언하였다. 동시에, 청구인에 대한 범죄 수사의 숫자와 속도가 증가하였다. 몇 달 후, 새로 채택된 헌법 개정안에 따라 청구인 및 같은 당에 속한 거의 모든 의원을 포함하여 야당 의원 154명의 면책 특권이 폐지되었다. 청구인과 그 외 다수의 야당 지도자들이 미결구금되었다. 이를 근거로 재판소는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지 못하도록 하는 양상을 확인하였다. 셋째, 재판소는 청구인이 장기간 구금된 시기, 특히 여야 간 중요한 이견이 있었던 중대 개헌에 관한 국민투표와 신청인이 후보로 나섰던 대통령 선거라는 두 가지 결정적인 선거 운동 기간에 구금되었다는 점에 치중하였다. 넷째, 청구인이 석방 당일 미결구금 상태로 되돌아간 정황도 당국의 관심사는 그저 청구인을 가두기만 하면 되었다는 점을 시사한다. 실제로 청구인을 지속적으로 추적한 근거가 된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한 별도의 조사가 시작되었다. 튀르키예 대통령은 다음 날 논평에서 이 문제를 주시하고 있고 청구인을 “놓아줄 수 없다”고 밝혔다. 다섯째, 재판소는 새로 시행된 헌법 개혁의 결과가 튀르키예 사법 제도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는 베니스 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특히 중요하게 보았는데, 무엇보다 대통령과 그의 정당이 판검사 임명, 징계, 해임을 감독하며 사법부 내 주요 자치기구 구성에 대한 통제권을 획득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재판소는 이러한 배경이 특히 쿠데타 미수 후 수백 명의 판사가 해임된 비상사태 기간, 특히 청구인을 포함한 반대자들에 대한 형사 소송과 관련하여 특정한 국가 법원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다고 결론지었다. 이에 따라 재판소는 제5조와 결합된 제18조 위반이라고 판단하게 되었다(또한, 다른 야당 의원이 제기한 사건인 *Yuksekdag Senoglu and Others v. Türkiye*, 2022, §§ 638-640 참조).

148. 정부 비판자, 시민사회 활동가, 야당 정치인, 인권 옹호자를 표적으로 삼는 자의적 체포 구금 및 기타 제한의 양상을 드러내는 다음의 아제르바이잔 사건들에서, 활동을 이유로 청구인들을 침묵하게 하거나 처벌하고 활동을 방해하는 이면의 목적은 제5조제1항제(c)호가 의미하는 “합리적인 의심”의 결여(또는 문제가 된 기타 실체적 조항에 따른 정당한 목적 부재)를 관련 사건별 사실관계 또는 전후관계 요인을 조합하여 입증되었다(*Azizov and Novruzlu v. Azerbaijan*, 2021 사건은 “합리적인 의심” 부재에 관한 제소가 절차적 사유로 각하 선언된 예외).

149. *Ilgar Mammadov v. Azerbaijan*, 2014 사건에서, 이러한 사건별 사실관계에는 당국을 비판하고 당국이 은폐하려는 정보를 유포한 청구인의 블로그 게시물, 이를 비난하는 당국의 공개 성명, 혐의, 체포 간 날싸순으로 밀접한 상관관계가 포함되었다(§§ 141-143).

150. *Yunusova and Yunusov v. Azerbaijan (no. 2)*, 2020 (§§ 191–193), *Khadija Ismayilova v. Azerbaijan (no. 2)*, 2020, § 118; *Natig Jafarov v. Azerbaijan*, 2019 (§ 67), *Aliyev v. Azerbaijan*, 2018 (§§ 208–215), *Rasul Jafarov v. Azerbaijan*, 2016 (§§ 156–162), *Mammadli v. Azerbaijan*, 2018 (§§ 98–104) 및 *Democracy and Human Rights Resource Centre and Mustafayev v. Azerbaijan*, 2021 사건에서 일반적인 관련 요인으로는 아제르바이잔에서 비정부기구와 그 자금을 점점 더 가혹하게 규제하고, 고위 관리 및 친정부 언론이 청구인과 같은 활동가들이 외부 세력이고 반역자라고 주장하며, 해당하는 다른 활동가들이 동시 구금 및 형사 기소된다는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재판소는 이 사건들이 아제르바이잔 당국의 확립된 권력 남용 양상에 속하며 그 결과 시민 사회를 탄압하게 되었다는 점에 치중하였다. 또한 재판소는 청구인들의 활동 및/또는 문제가 된 연쇄 사건과 관련된 구체적인 특징도 고려하였다.

151. *Aliyev v. Azerbaijan*, 2018 사건 및 *Democracy and Human Rights Resource Centre and Mustafayev v. Azerbaijan*, 2021 사건에서 재판소는 수많은 사건에서 재판소 앞에 선 인권 변호사 및 법적 대리인이라는 청구인들의 특별한 역할을 특히 중시하였다. 당국은 청구인 알리에브(Aliyev)의 자택과 사무실을 임의로 수색하면서 청구인의 비정부기구 활동 관련 문서를 압수했을 뿐만 아니라 재판소에 계류 중인 청구와 관련된 것을 비롯하여 변호사-고객 간 기밀이 보장되는 사건 파일도 법률 전문가의 특권을 무시하고 가져갔다. 그 결과, 청구인은 유의미한 방식으로 활동을 수행할 수 없었다(*Aliyev v. Azerbaijan*, 2018, §§ 208, 211 및 213).

152. *Democracy and Human Rights Resource Centre and Mustafayev v. Azerbaijan*, 2021 사건은 청구인의 은행 계좌 동결 및 여행 금지 부과에 관한 사안이다. 재판소는 국내 법원이 유럽평의회가 소송 경비 보조로 청구인에게 송금한 금액에 대해 해당 금액이 범죄의 목적물을 구성하고 “그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압류 명령을 채택한 사실에 특히 강한 인상을 받았다. 형사 범죄로 기소되지도 않은 청구인들을 형사 사건의 틀 안에 두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들의 업무를 마비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적용되었고, 실제로 압류 명령이 구체적인 금액에 국한되지 않고 청구인들의 모든 은행 계좌에 적용된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 여행 금지 부과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제시되지 않았다(§§ 107–109).

153. *Mammadli v. Azerbaijan*, 2018 사건에서 재판소는 형사 제소한 시기, 즉 청구인의 비정부기구가 대선을 비판하는 보고서를 발표한 지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무게를 두었다. 또한 청구인에 대한 혐의가 2013년 대선 현황점검 비용 조달을 목적으로 수여된 보조금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였다(§ 102).

154. *Natig Jafarov v. Azerbaijan*, 2019 사건에서 재판소는 형사 절차가 개시된 시기와 일련의 사건 전체, 즉 개헌 국민투표 캠페인 등록 절차가 활발히 진행되던 시기에 청구인이 체포되고 이후 그의 정치 운동 조직이 여러 회원의 체포로 캠페인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직후 석방되었다는 점에 특별히 치중하였다. 주장된 이면의 목적의 성격 및 파악 가능한 정도와 관련하여, 재판소는 개헌 국민투표를 앞두고 야당 운동원을 협박하면 지지자들이 공개적인 정치 토론에 참여하지 못하게 할 가능성이 심각하며, 따라서 청구인이나 동료 야당 활동가, 지지자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본질 자체에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하였다(§ 68–69).

155. *Khadija Ismayilova v. Azerbaijan (no. 2)*, 2020 사건에서 재판소는 탐사 언론인인 청구인의 활동이 반역죄에 해당하며 외국 첩보 기관을 위한다는 취지의 공개 성명을 한 고위 관리가 발표한 지 이틀 만에 청구인이 체포된 사건의 연쇄 발생에 특히 치중하였다. 처음에는 강압에 의한 허위 신고를 근거로 구금되었으나, 검찰 당국의 조치가 드러나려 하자 추가 범죄 혐의로 기소되었다 (§§ 116–117).

156. *Rashad Hasanov and Others v. Azerbaijan*, 2018 및 *Azizov and Novruzlu v. Azerbaijan*, 2021 사건에서도 마찬가지로 재판소는 청구인들에 대한 형사 소송이 제기된

시기, 즉 그들의 비정부기구(NIDA)가 조직하고 진행했던 일련의 반정부 시위 직후이자 또 다른 시위 예정일의 전날이라는 점에 치중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재판소는 경찰이 아닌 검찰총장실 중대범죄부서가 국가안보부의 개입을 받아 수사한 사건에 대한 특별 대우에 주목하였다. 다수의 NIDA 회원이 체포된 후 해당 당국이 발표한 공동 언론 성명을 보면 처음부터 NIDA를 표적으로 삼고 청구인들의 마약류 및 화염병 소지 혐의를 그들이 NIDA 회원인 것과 연결시켰다는 점이 분명하였다. 무엇보다도 성명에 아무런 사유나 증거 없이 NIDA를 “파괴적인 세력”으로 묘사하고 불법 활동으로 규정하였으며 불과 며칠도 지나지 않아 네 명의 이사가 체포되었다. 재판소는 청구인들의 아파트 한 곳에서 발견된 “민주주의 급구, 전화: +994, 주소: 아제르바이잔”이라고 적힌 전단지 등을 근거로 청구인들이 폭력 및 민간 소요사태를 선동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당국의 주장에 특히 주목하였다.

157. *Rashad Hasanov and Others v. Azerbaijan* 사건에서 청구인들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부재한 가운데, 재판소는 청구인들의 구금이 주장된 이면의 목적을 추구했다고 결론 내릴 수 있는 충분한 근거를 발견하였다(§§ 122–125). 이와 대조적으로 *Azizov and Novruzlu v. Azerbaijan*, 2021 사건에서는 해당 청구가 절차적 사유로 각하되었으므로, 재판소는 제5조제1항제(c)호에 따라 청구인들의 구금에 정당한 목적이 존재하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 따라서 재판소는 그러한 정당한 목적이 있었다는 가정 하에 복수의 목적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에 기초하여 이 사건을 검토하였다. 주장된 이면의 목적이 주된 목적이었다는 판단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요소는 다음과 같다. 당국은 4명의 이사진을 구금하여 추가 시위를 막고 활동을 마비시키기 위해 NIDA를 표적으로 삼은 활동을 ‘가장 중시’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소는 나아가 국내 법원이 청구인들의 미결구금 연장을 검토한 방식, 특히 두 번째 청구인이 미성년자로, 고려했더라면 빠른 석방으로 이어졌을 이렇게 중요한 요소를 완전히 무시한 점을 살펴보았다.

158. *Ibrahimov and Mammadov v. Azerbaijan*, 2020 사건에서 재판소는 NGO NIDA를 표적화한 또 다른 예시를 검토하였고, 해당 NGO의 구성원들은 전 대통령 동상에 반정부 낙서를 남긴 후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 구금되었고 “합리적인 의심”이 부재한 가운데 마약 밀매로 기소되었다. *Rashad Hasanov and Others v. Azerbaijan*, 2018 사건에서 확립된 전반적인 전후관계와 구체적인 특징에 의거하여 재판소는 문제가 된 수단은 청구인을 해당 행위로 처벌하려는 의도였음을 인정하였다(§§ 151–157).

159. 특히, *Mammadli v. Azerbaijan*, 2018 (§ 103) 사건 및 *Rashad Hasanov and Others v. Azerbaijan*, 2018 (§ 124) 사건에서, 시민사회 활동가라는 청구인들의 신분과 상기 언급한 기타 관련 전후관계 요소에 비추어, 재판소는 청구인들이 야당 지도자나 공무원이 아니므로 기소에 정치적 동기가 없었다는 정부의 변론을 기각하였다.

## E. 증명되지 않은 청구

160. 다음 사건들에서 재판소는 국가 당국이 협약에 명시된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을 추구했다거나 그러한 목적이 주된 목적이었다고 결론 내릴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납득하지 않았다.

161. *Merabishvili v. Georgia* [GC], 2017 사건에서 재판소는 청구인을 정계에서 제거한다는 이면의 목적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청구인을 미결구금한 주된 목적이라고 판단할 수 없었다. 재판소는 사건의 정치적 맥락을 넓혀 보고 형사 절차가 진행되어 온 방식도 고려하였다. 첫째, 청구인 정당이 여러 고위 공직자들을 기소한 것과 정부 관리들의 관련 진술은, 법원이 행정부로부터 충분히 독립적이지 않다는 증거가 없는 한, 그 자체로는 청구인을 미결구금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정치적 목적에서 비롯하였다는 결론을 끌어낼 수 없었다(§ 324). 둘째, 재판 기간이 불합리할 정도로 길지 않았고, 재판 장소(수도 외곽)가 법원 고르기(forum shopping)의 냄새가 나는 것도 아니었다. 셋째, 제5조제3항의 관점에서

볼 때 법원 결정에 결점이 있는 것만으로 정치적 목적의 존재를 입증할 수 없다. 넷째, 다른 회원국 법원이 청구인 정당 출신 다른 전직 공무원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그들에 대한 형사 기소에 정치적 동기가 있다는 이유로 기각하였다는 사실이 반드시 그 점에 대한 재판소의 평가를 좌우하는 것은 아니었다. 해당 사건들의 사실관계는 동일하지 않았다. 또한 범죄인 인도를 판단하는 법원은 미래 위험을 평가하고 있었지만, 재판소는 과거의 사실관계에 관심이 있었다(§§ 322-332)(또한, 새 집권당과 전 집권당 간 격렬한 반목이라는 동일한 정치적 맥락과 청구인을 비롯하여 전 집권당 지도자들의 형사 기소 사례에 관한 *Ugulava v. Georgia*, 2023 참조. 재판소는 제5조제1항과 결합된 제18조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126-131)).

162. *Kamma v. the Netherlands* (위원회 보고서, 1974) 사건에서 청구인은 갈취 혐의로 구금되었고, 경찰은 청구인이 구금된 기간을 이용하여 살인 사건 연루 혐의에 대해 심문하였다. 위원회는 경찰이 기존 절차대로 진행할 권한이 있었고, 구금이 살인 사건에서 청구인의 위치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제18조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pp. 10-13).

163. *Ramishvili and Kokhraidze v. Georgia* (dec.), 2007 사건에서 청구인들은 텔레비전 채널의 공동 설립자이자 주주로 부패가 의심되는 국회의원들을 난처하게 만드는 다큐멘터리의 비공개를 대가로 금품을 요구한 공갈 혐의로 구금되었다. 재판소는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대로 이들의 구금은 해당 텔레비전 채널이 침묵하게 하고 비판적 언론인으로서의 의견 표명을 막아 관련 국회의원과 집권당의 체면을 지키는 이면의 목적을 추구한다고 판단할 수 없었다. 청구인들은 조지아의 일반적인 인권 문제를 언급하는 것 외에는 자신들의 사건에 이면의 목적이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지적하지 않았다. 그 반면에 재판소는 주장된 이면의 목적이 없다고 가리키는 여러 가지 요소에 주목하였다. 특히 청구인들에 대한 혐의는 그들의 언론 활동과 관련이 없었다. *Gusinskiy v. Russia*, 2004 사건의 입장과 달리 정부는 청구인들에게 형사 소송 종단을 대가로 한 어떠한 협상도 제안하지 않았다. 해당 채널은 방송을 계속 하였고 논란이 된 다큐멘터리는 구금된 후에도 방영되었다. 게다가 해당 의원은 조지아 의회가 자신의 상업적 활동을 자체 조사하기 시작하자 사임하였다. 따라서 제5조와 결합된 제18조에 따른 청구인들의 청구는 증명되지 않았기에 기각되었다.

164. *Dochnal v. Poland*, 2012 사건에서 청구인은 사업가이자 로비스트이며 탈세, 자금 세탁 및 국회의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미결구금되었다. 이러한 혐의는 (c) "합리적인 의심"에 해당하며, 따라서 청구인의 구금은 제5조제1항제(c)호에 명시된 목적을 추구하였다. 재판소는 이 사건에서 당국의 진정한 의도는 여러 가지 민감한 정치적 사안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추가 증언을 받아내려는 것이라는 의심이 다소 생길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였다. 그러나 이면의 목적을 주장하는 청구인의 제출물은 당국이 자신을 박해 및 학대하기 위하여 잡아 두었다는 주장으로 국한되었다. 따라서 제5조제1항과 결합된 제18조에 따른 청구인의 청구는 정당한 증거가 없음이 명백하여 기각되었다(§§ 115-116).

165. *Mirgadirov v. Azerbaijan and Turkey*, 2020 사건에서 청구인은 언론인이자 정치 분석가로 아르메니아 국정원에 정보를 넘겼다는 이유로 반역죄 혐의로 미결구금되었다. 재판소는 해당 혐의는 "합리적인 의심"에 근거하지 않았고 따라서 청구인의 구금은 제5조제1항 위반이라고 보았다. 청구인이 자신을 구금하여 직업 활동을 방해할 의도였다고 주장하자 재판소는 해당 주장이 간략하고 일반적이어서 그다지 구체적이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청구인은 정치 언론인으로서 스스로 생각하기에 보복이나 박해 목적의 체포 및 구금을 유발할 수 있는 행동을 취했거나 기사 또는 글을 작성한 것은 언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재판소는 협약 제5조와 결합된 제18조 위반이라고 판단할 수 없었다.

166. *Nastase v. Romania* (dec.), 2014 사건에서 청구인은 전직 총리이자 정당 의장이며 다수의 부패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에 정치적 동기가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그가 "정치 계급의 부패를 상징" 하며 따라서 징역형을 "본보기로

선고”해야 한다는 판결 문구를 지적하였다. 그러나 재판소는 이러한 문구가 이면의 동기를 표명했다기 보다는 청구인의 형사 책임에 대한 국내 법원의 판단 결과라고 보았다. 또한, 국내 법원 판결은 합리적이었으며 국내법 관련 조항에 근거하였다. 고위급 정치인이라는 청구인의 신분은 당국의 실제 관심사가 청구인의 유죄 판결이라는 의심을 일으킬 수 있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구체적인 권력 남용의 증거를 언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재판소는 제6조제1항과 결합된 제18조에 따른 청구인의 청구는 근거가 없음이 명백하여 기각하였다(§§ 108-109).

167. *Tchankotadze v. Georgia*, 2016 사건에서 청구인은 고위 공무원으로 조지아 대통령 사카슈빌리의 당선 직후 권력 남용으로 기소되어 구금되었다. 대선 운동 기간 사카슈빌리는 청구인이 “감방에 갈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위협하였다. 재판소는 문제가 된 위협으로 청구인의 기소 및 관련 미결구금의 배후에 이면의 목적이 있다고 판단하기에는 불충분하기 때문에 제5조와 결합된 제18조에 따른 청구인의 청구를 근거가 없음이 명백하여 기각하였다. 기타 추가 증거 또는 변론이 부재한 가운데 재판소는 형사 절차의 개시가 반드시 그러한 위협과 관련이 있다거나 사카슈빌리 대통령이 다른 방식으로 사건 전개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입증할 수 없었다. 또한, 검찰이나 사법 당국이 공식 또는 비공식 채널을 통해 불순한 동기가 존재한다고 시사한 어떠한 증거도 없었다(§§ 114-115).

168. *Batiashvili v. Georgia*, 2019 사건에서 청구인은 저명한 야당 인사로 반란을 일으킨 무장 집단에 조력한 혐의로 형사 절차와 연관되어 구금되었다. 고위 정치 인사들이 자신의 체포 직전 및 직후에 낸 성명을 언급하며 미결구금 배후의 목적은 정계에서 본인의 제거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재판소가 보기에 이러한 요소들만으로는 법원이 행정 당국으로부터 충분히 독립적이지 않다는 증거가 부재한 가운데 이면의 목적에 따라 움직였다는 결론으로 이어질 수 없었다. 청구인에 대한 심리 절차가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재판소는 미결구금 배후에 이면의 동기가 있었다고 입증할 수 없었고, 이는 또한 제5조제1항제(c)호에 명시된 목적을 위해 수행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101-103).

169. 다음과 같은 v. 튀르키예 사건들은(*Sabuncu and Others v. Turkey*, 2020, *Şık v. Turkey (no. 2)*, 2020, *Ahmet Hüsrev Altan v. Turkey*, 2021) 언론인과 출판인이 취할 수 있는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는 편집자로서의 입장을 테러 조직을 지지하는 선전이나 쿠데타 시도에 연루된 것과 불합리하게 동일시하여 그들을 장기 미결구금한 사안이다. 재판소는 제5조제1항 및 제10조를 각각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실제로 청구인들에 대한 혐의는 제5조제1항제(c)호가 의미하는 “합리적인 의심”에 근거하지 않았다. 본질적으로 국내법상 범죄로 간주될 수는 없지만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 행사와 관계된 행위에 근거하였다. 동시에, 재판소가 보기에 이러한 사건의 특징들이 모여 “충분히 동질적인 일체를 구성”하지 못하였기에 가능한 이면의 목적을 짚어낼 수 없었다. 재판소는 심각한 혼란, 인명 손실, 국가 비상사태 선포 등을 특히 고려할 때 대규모 수사를 정당화하는 쿠데타 시도의 전후관계를 중시하였다. 게다가 재판소는 청구인들의 체포와 기소된 행위 간 시간이 지나치게 흐르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 조치의 시기가 온당치 못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나아가 *Sabuncu and Others v. Turkey* 및 *Şık v. Turkey (no. 2)* 사건에서 재판소는 특정 기사 작성자에게 “비싼 값을 치르게” 할 것이라고 위협하는 튀르키예 공화국 대통령의 공개 발언을 살펴본 후 해당 발언은 청구인들을 ‘구체적으로’ 겨냥한 것이 아니라 사건 당시 편집국장의 편집 방침을 따르던 신문사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어쨌든 국내 법원이 어떤 식으로든 문제가 된 발언에 영향을 받았다는 증거는 없었다. 재판소는 세 사건 모두 공통으로 헌법재판소가 청구인들의 청구를 철저히 조사한 점에 주목하였다. 마지막으로, 청구인들의 구금이 본인 및 다른 정치 언론인들을 위축시키는 효과가 났을 수도 있지만, 이 사실만으로는 협약 제5조제1항 및 제10조가 결합된 제18조 위반이었다고 결론지을 수 없다.

170. 유명 정치인의 자유를 정치적 동기로 박탈했다는 주장을 다룬 *Korban v. Ukraine*, 2019 사건에서 재판소는 해당 정치인이 위반을 저질렀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있었다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에 대한 형사 소송이 1년 이상 계속하던 상태에서 갑자기 명백한

이유도 없이 특수부대가 개입하여 체포되었고, 검찰 당국에 해당 사건은 특히 긴급하고 열성을 보여야 할 사안이 되었다. 이러한 사건은 정당, 대중 매체, 시민 사회가 대체로 선택적 정의라고 인지하였고 실제로 이면의 목적을 가리키는 지표일 가능성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재판소는 제18조에 따른 본인의 청구를 뒷받침하기 위해 청구인이 제기한 구체적인 변론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재판소는 무엇으로도 이면의 동기를 주된 동기로 판단하기는커녕 청구인의 기소 배후에 이면의 동기가 있다고 밝혀낼 수도 없었다. 첫째, 청구인은 당시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갈등을 빚어 사임한 당시 지역 주정부 수장의 정치 팀원이었지만, 해당 공무원이나 그의 다른 지지자들은 정치적 박해에 대해 어떠한 불만도 제기하지 않았다. 둘째, 국회의원 선거에서 승리한 대통령 소속 정당 후보가 자신의 득표율의 절반도 채 얻지 못한 청구인에게 사후에 복수하려 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였다. 또한, 청구인은 선거 결과가 조작되었다고 주장하였지만, 제1의정서 제3조에 따라 해당 요지의 청구는 제기하지 않았다. 셋째, 당시 대통령이나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억압하려 했다는 정보는 전혀 없다. 넷째, 청구인에 대한 형사 소송은 청구인의 정당 창당 약 1년 전에 개시되었다. 청구인의 정당도 지방 선거에서 승리하기는 했지만 당시 대통령과 무관하고 선거 결과도 더 좋았던 다른 두 정당은 박해 혐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따라서 재판소는 제5조와 결합된 제18조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216-225).

171. *Ovcharenko and Kolos v. Ukraine*, 2023 사건에서 헌법재판관인 청구인들은 우크라이나 존엄 혁명으로 알려진 사건들의 예외적인 맥락 속에서 직위 해제되었다. 재판소는 당국이 어떤 이면의 동기를 추구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들이 민주주의와 권력 분립의 기본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밝혀진 판결에 참여하였을 때 “선서 위반”을 저질렀다는 순수한 믿음으로 행동하였다고 인정하였다. 따라서 제18조에 따른 청구인들의 청구는 근거가 없음이 명백하여 기각되었다(§§ 134-136).

172. *OAO Neftyanaya Kompaniya Yukos v. Russia*, 2011, *Khodorkovskiy v. Russia*, 2011, 및 *Khodorkovskiy and Lebedev v. Russia*, 2013 사건은 각각 러시아 최대 석유 생산업체, 고위 경영진 및 대주주가 제기한 것으로 모두 러시아 최고 부호에 속하였다. 호도르콥스키(Khodorkovskiy) 역시 야당을 지원하기 위해 상당한 자금을 할당하는 등 활발한 정치 활동을 펼쳤다. 두 경영진 모두 탈세와 사기 혐의로 구금된 후 유죄 판결을 받았다. 같은 기간 유코스에 대한 과세 및 강제 집행 절차가 제기되어 회사는 파산하였다. 유코스의 파산은 체납 세금 강제 추징과 비례성을 상실한 집행관 수수료의 결과이다.

173. 재판소는 당국이 “올리가키”의 정치적 영향력을 줄이려 하고 유코스 사업 계획은 회사 해체의 주요 수혜자에 속하는 국가의 석유 정책을 거스르고 있던 이 사건들을 둘러싼 정황이 청구인의 부적절한 동기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인정하였다(*Khodorkovskiy and Lebedev v. Russia*, 2013, § 910; *OAO Neftyanaya Kompaniya Yukos v. Russia*, 2011, §§ 237-238).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소는 문제가 된 소송 절차가 주장대로 정계에서 호도르콥스키를 제거하고 국가가 유코스의 자산을 전용하게 하는 이면의 목적을 주된 목적으로 추구했다고 납득하지는 않았다(*Khodorkovskiy v. Russia*, 2011, § 260; *OAO Neftyanaya Kompaniya Yukos v. Russia*, 2011, § 665; *Khodorkovskiy and Lebedev v. Russia*, 2013, § 908).

174. 청구인들은 제18조에 따른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전후관계 증거 및 정치 기관, 비정부기구 또는 공인의 권위 있는 견해에 의거하였다. 재판소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직접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결하였다(*Khodorkovskiy v. Russia*, 2011, § 260; *OAO Neftyanaya Kompaniya Yukos v. Russia*, 2011, § 663; *Khodorkovskiy and Lebedev v. Russia*, 2013, § 902). 그러나 *Merabishvili v. Georgia* [GC], 2017 사건에서 재판소는 이러한 청구 관련 직접 증거로만 제한하지 않으며 증명 책임은 일방 또는 타방이 부담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하였다(§§ 311 및 316). 따라서 이 사건들은 해당 설명에 비추어 해석되어야 한다. 재판소는 또한 다음과 같은 변론에 의거하였다.

175. 첫째, 호도르콥스키를 심각한 정적으로 인식한 당국의 인식과 유코스 파산으로 국영 기업에 발생하는 이익은 그러한 고위급을 형사 기소하면 그의 경쟁자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제18조 위반을 입증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또한 이러한 고려사항 때문에 혐의가 심각한데도 해당 인물을 기소하지 못해서는 안 되며 이는 “정치적 신분이 높다고 하여 면책이 부여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Khodorkovskiy v. Russia*, 2011, §§ 257–58; *Khodorkovskiy and Lebedev v. Russia*, 2013, § 903).

176. 둘째, 유코스 경영진에 대한 혐의는 진실하고 심각하며, 형사 사건에 “건전한 핵심”이 있다는 점이다(*Khodorkovskiy v. Russia*, 2011, § 258; *Khodorkovskiy and Lebedev v. Russia*, 2013, § 908). 당국은 유코스의 탈세에 대응하기 위해 합법적인 조치도 취하였다(*AO Neftyanaya Kompaniya Yukos v. Russia*, 2011, § 664). 재판소는 예측 불가능하고 불법적이며 자의적인 국내법 해석의 결과로 채무가 인정되었다는 회사의 주장을 기각하였다(*ibid.*, §§ 605, 616 및 664).

177. 셋째, 유코스 경영진에 대한 고발은 그들의 정치 활동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형사 범죄로 기소된 것이었다(*Khodorkovskiy and Lebedev v. Russia*, 2013, § 906).

178. 마지막으로, 청구인들의 동료를 러시아로 인도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유코스 관련 사건에서 러시아 당국에 대해 법적 지원을 거부하거나 금지 명령을 내리거나 판결액을 부과한 그 외 회원국 법원의 판결은 강력한 변론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원에서의 증거와 변론이 재판소에서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하지 않았다(*Khodorkovskiy v. Russia*, 2011, § 260; *Khodorkovskiy and Lebedev v. Russia*, 2013, § 900).

179. 재판소는 주장된 이면의 목적의 존재를 입증할 수 없었으며, *Khodorkovskiy v. Russia*, 2011 사건에서 제5조와 결합된 제18조 위반 및 *AO Neftyanaya Kompaniya Yukos v. Russia*, 2011 사건에서 제1의정서 제1조와 결합된 제18조 위반이 없다고 판단하였다(또한 *Nevzlin v. Russia*, 2022, §§ 124–125 참조). *Khodorkovskiy and Lebedev v. Russia*, 2013 사건에서 재판소는 청구인들의 형사 기소 배후에 이면의 목적이 있다고 받아들여야 하였다. 그러나 이면의 목적이 주된 목적으로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18조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180. *Khodorkovskiy and Lebedev v. Russia (no. 2)*, 2020 사건에서 청구인들은 새로운 수사가 계류 중이라는 이유로 복역 중이던 교정시설에서 이송된 구치소(remand prison)에서는 장기 가족접견이 불가능한 것과 관련하여 제8조와 결합된 제18조에 따라 문제를 제기하였다. 문제의 제한은 정당한 목적도 없고 필수적인 정당화도 이루어지지 않아 그 자체만으로도 제8조 위반에 해당하였다. 해당 제한은 구치소 재소자라면 누구에게나 무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국내법 조항에 근거한 것이므로, 재판소는 이 사건에서 본 조항을 적용한 사실을 토대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면의 동기에 대한 증거를 찾을 수 없었고 협약 제18조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624–626).

## 인용 판례 목록

이 해설서에 인용된 판례는 재판소가 내린 판결 또는 결정과 유럽인권위원회(“위원회”)의 결정 또는 보고서를 의미합니다.

특별한 표시가 없는 한, 모든 인용문은 소재판부(Chamber)가 선고한 본안판결(judgment on the merits)에 대한 것입니다. 약칭 “(dec.)”은 재판소의 결정(decision)에서 인용하는 것을 의미하고, “[GC]”는 해당 사건이 대재판부(Grand Chamber)에서 심리된 것임을 나타냅니다.

소재판부의 판단 중 이 개정판 발간 당시 협약 제44조에서 의미하는 최종확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래 목록에 별표(\*)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협약 제44조제2항에는 “(a) 당사자가 사건을 대재판부 회부를 요청하지 않기로 선언하는 경우, (b) 당사자가 대재판부 회부를 요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는 경우 또는 (c) 대재판부의 패널(panel)이 제43조에 따른 회부 요청을 거부한 경우 소재판부의 판결은 최종적으로 확정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재판부의 패널이 회부 요청을 수락한 경우, 소재판부의 판단은 최종판단이 아니며 따라서 법적 효력이 없고, 이후 대재판부의 판단이 최종판단이 됩니다.

이 해설서의 전자판에 인용된 사건의 하이퍼링크는 재판소 판례(대재판부, 소재판부 및 위원회 판결과 결정, 언급된 사건, 권고적 의견 및 판례정보노트(Case-Law Information Note)의 결정요지(legal summary), 위원회의 판례(결정 및 보고서), 각료위원회 결의에 접속할 수 있는 HUDOC 데이터베이스(<http://hudoc.echr.coe.int>)로 연결합니다.

재판소는 두 공식 언어인 영어나 프랑스어 중 하나 또는 두 언어 모두로 판결과 결정을 내립니다. HUDOC는 다수의 주요 판례를 30가지 이상의 비공식 언어로 번역한 번역본 및 제3자가 작성한 100여 개 온라인 판례집으로 연결되는 링크도 제공합니다. 인용 사례에 사용할 수 있는 인용된 사건에 대한 번역본들은 해당 사건의 하이퍼링크를 클릭한 후 연결되는 HUDOC 데이터베이스에서 ‘번역본(Language versions)’ 탭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A—

*Ahmet Hüsrev Altan v. Turkey*, no. 13252/17, 13 April 2021  
*Akhalaia v. Georgia* (dec.), nos. 30464/13 and 19068/14, 7 June 2022  
*Aktaş v. Turkey*, no. 24351/94, ECHR 2003-V  
*Aliyev v. Azerbaijan*, nos. 68762/14 and 71200/14, 20 September 2018  
*Ashingdane v. the United Kingdom*, 28 May 1985, Series A no. 93  
*Avraamova v. Ukraine* [Committee], no. 2718/12, 20 September 2022  
*Azimov v. Russia*, no. 67474/11, 18 April 2013  
*Azizov and Novruzlu v. Azerbaijan*, nos. 65583/13 and 70106/13, 18 February 2021

### —B—

*Baka v. Hungary* [GC], no. 20261/12, 23 June 2016  
*Bączkowski and Others v. Poland*, no. 1543/06, 3 May 2007  
*Batiashvili v. Georgia*, no. 8284/07, 10 October 2019  
*Beyeler v. Italy* [GC], no. 33202/96, ECHR 2000-I  
*Bîrsan v. Romania* (dec.), no. 79917/13, 2 February 2016

*Bozano v. France*, 18 December 1986, Series A no. 111

—C—

*C.R. v. Switzerland* (dec.), no. 40130/98, 14 October 1999

*Cebotari v. Moldova*, no. 35615/06, 13 November 2007

*Čonka v. Belgium*, no. 51564/99, ECHR 2002-I

*Cyprus v. Turkey* [GC], no. 25781/94, ECHR 2001-IV

—D—

*Democracy and Human Rights Resource Centre and Mustafayev v. Azerbaijan*, nos. 74288/14 and 64568/16, 14 October 2021

*Denisov v. Ukraine* [GC], no. 76639/11, 25 September 2018

*De Wilde, Ooms and Versyp v. Belgium*, 18 June 1971, Series A no. 12

*Dochnal v. Poland*, no. 31622/07, 18 September 2012

—E—

*El-Masri v. the former Yugoslav Republic of Macedonia* [GC], no. 39630/09, ECHR 2012

*Eshonkulov v. Russia*, no. 68900/13, 15 January 2015

—G—

*Gafgaz Mammadov v. Azerbaijan*, no. 60259/11, 15 October 2015

*Giorgi Nikolaishvili v. Georgia*, no. 37048/04, 13 January 2009

*Georgia v. Russia (I)* [GC], no. 13255/07, ECHR 2014

*Gillow v. the United Kingdom*, 24 November 1986, Series A no. 109

*Gusinskiy v. Russia*, no. 70276/01, ECHR 2004-IV

*Guzzardi v. Italy*, 6 November 1980, Series A no. 39

—H—

*Hakobyan and Others v. Armenia*, no. 34320/04, 10 April 2012

*Haziye v. Azerbaijan*, no. 19842/15, 6 December 2018

*Huseynli and Others v. Azerbaijan*, nos. 67360/11 and 2 others, 11 February 2016

—I—

*Ibrahimov and Mammadov v. Azerbaijan*, nos. 63571/16 and 5 others, 13 February 2020

*Ibrahimov and Others v. Azerbaijan*, nos. 69234/11 and 2 others, 11 February 2016

*Ilgar Mammadov v. Azerbaijan*, no. 15172/13, 22 May 2014

*Ilgar Mammadov v. Azerbaijan (no. 2)*, no. 919/15, 16 November 2017

*Ilgar Mammadov v. Azerbaijan* (infringement proceedings) [GC], no. 15172/13, 29 May 2019

*Ireland v. the United Kingdom*, 18 January 1978, Series A no. 25

*Isik v. Turkey*, no. 24128/94, Commission decision of 29 November 1995

*Iskandarov v. Russia*, no. 17185/05, 23 September 2010

—J—

*Janowiec and Others v. Russia* [GC], nos. 55508/07 and 29520/09, ECHR 2013  
*Jordan v. the United Kingdom* (dec.), no. 22567/02, 23 November 2004  
*Josephides v. Turkey* (dec.), no. 21887/93, 24 August 1999  
*Juszczyszyn v. Poland*, no. 35599/20, 6 October 2022

—K—

*Kafkaris v. Cyprus* [GC], no. 21906/04, ECHR 2008  
*Kamma v. the Netherlands*, no. 4771/71, Commission's report of 14 July 1974  
*Kasparov v. Russia*, no. 53659/07, 11 October 2016  
*Kavala v. Turkey*, no. 28749/18, 10 December 2019  
*Kavala v. Türkiye* [GC], no. 28749/18, 11 July 2022  
*Khadija Ismayilova v. Azerbaijan*, nos. 65286/13 and 57270/14, 10 January 2019  
*Khadija Ismayilova v. Azerbaijan (no. 2)*, no. 30778/15, 27 February 2020  
*Khodorkovskiy v. Russia*, no. 5829/04, 31 May 2011  
*Khodorkovskiy v. Russia (no. 2)* (dec.), no. 11082/06, 8 November 2011  
*Khodorkovskiy and Lebedev v. Russia*, nos. 11082/06 and 13772/05, 25 July 2013  
*Khodorkovskiy and Lebedev v. Russia (no. 2)*, nos. 42757/07 and 51111/07, 14 January 2020  
*Korban v. Ukraine*, no. 26744/16, 4 July 2019  
*Kucheruk v. Ukraine*, no. 2570/04, 6 September 2007  
*Kutayev v. Russia*, no. 17912/15, 24 January 2023

—L—

*Lashmankin and Others v. Russia*, nos. 57818/09 and 14 others, 7 February 2017  
*Lawless v. Ireland (no. 3)*, 1 July 1961, Series A no. 3  
*Lebedev v. Russia (no. 2)* (dec.), no. 13772/05, 27 May 2010  
*Lingens v. Austria*, 8 July 1986, Series A no. 103  
*Lutsenko v. Ukraine*, no. 6492/11, 3 July 2012

—M—

*Mammadli v. Azerbaijan*, no. 47145/14, 19 April 2018  
*Merabishvili v. Georgia* [GC], no. 72508/13, 28 November 2017  
*Mirgadirov v. Azerbaijan and Turkey*, no. 62775/14, 17 September 2020  
*Miroslava Todorova v. Bulgaria*, no. 40072/13, 19 October 2021

—N—

*Nachova and Others v. Bulgaria* [GC], nos. 43577/98 and 43579/98, ECHR 2005-VII  
*Nastase v. Romania* (dec.), no. 80563/12, 18 November 2014  
*Natig Jafarov v. Azerbaijan*, no. 64581/16, 7 November 2019  
*Navalnyy v. Russia* [GC], nos. 29580/12 and 4 others, 15 November 2018  
*Navalnyy v. Russia (no. 2)*, no. 43734/14, 9 April 2019  
*Navalnyy and Gunko v. Russia*, no. 75186/12, 10 November 2020  
*Navalnyy and Ofitserov v. Russia*, nos. 46632/13 and 28671/14, 23 February 2016  
*Navalnyy and Others v. Russia* [Committee], no. 25809/17 and others, 4 October 2022

*Navalnyy and Yashin v. Russia*, no. 76204/11, 4 December 2014  
*Navalnyy v. Russia*, no. 101/15, 17 October 2017  
*Nemtsov v. Russia*, no. 1774/11, 31 July 2014  
*Nevzlin v. Russia*, no 26679/08, 18 January 2022  
*Nikëhasani v. Albania*, no. 58997/18, 13 December 2022  
*NIT S.R.L. v. the Republic of Moldova* [GC], no. 28470/12, 5 April 2022  
*Nowak v. Ukraine*, no. 60846/10, 31 March 2011

—O—

*OAQ Neftyanaya Kompaniya Yukos v. Russia*, no. 14902/04, 20 September 2011  
*Oates v. Poland* (dec.), no. 35036/97, 11 May 2000  
*Oferta Plus S.R.L. v. Moldova*, no. 14385/04, 19 December 2006  
*Oleksiy Mykhaylovych Zakharkin v. Ukraine*, no. 1727/04, 24 June 2010  
*Ovcharenko and Kolos v. Ukraine*, nos. 27276/15 33692/15, 12 January 2023

—R—

*Ramishvili and Kokhreidze v. Georgia* (dec.), no. 1704/06, 27 June 2007  
*Rashad Hasanov and Others v. Azerbaijan*, nos. 148653/13 and 3 others, 7 June 2018  
*Rasul Jafarov v. Azerbaijan*, no. 69981/14, 17 March 2016  
*Razvozhayev v. Russia and Ukraine and Udaltsov v. Russia*, nos. 75734/12 and 2 others,  
19 November 2019  
*Rustamzade v. Azerbaijan*, no. 38239/16, 7 March 2019  
*Rustavi 2 Broadcasting Company Ltd and Others v. Georgia*, no. 16812/17, 18 July 2019

—S—

*Saakashvili v. Georgia* (dec.), nos. 6232/20 and 22394/20, 1 March 2022  
*Sabuncu and Others v. Turkey*, no. 23199/17, 10 November 2020  
*Savalanli and Others v. Azerbaijan*, no. 54151/11, 15 December 2022  
*Selahattin Demirtaş v. Turkey (no. 2)* [GC], no. 14305/17, 22 December 2020  
*Şener v. Turkey*, no. 26680/95, 18 July 2000  
*Shimovolos v. Russia*, no. 30194/09, 21 June 2011  
*Şık v. Turkey (no. 2)*, no. 36493/17, 24 November 2020  
*Staykov v. Bulgaria*, no. 16282/20, 8 June 2021

—T—

*Tchankotadze v. Georgia*, no. 15256/05, 21 June 2016  
*The United Macedonian Organisation Ilinden – PIRIN and Others v. Bulgaria (no. 2)*, nos. 41561/07  
and 20972/08, 18 October 2011  
*Timurtaş v. Turkey*, no. 23531/94, Commission’s report of 29 October 1998  
*Timurtaş v. Turkey*, no. 23531/94, ECHR 2000-VI  
*Tretiak v. Ukraine* [Committee], no. 16215/15, 17 December 2020  
*Tymoshenko v. Ukraine*, no. 49872/11, 30 April 2013

—U—

*Udaltsov v. Russia*, no. 76695/11, 6 October 2020  
*Ugulava v. Georgia*, no. 5432/15, 9 February 2023  
*Uspaskich v. Lithuania*, no. 14737/08, 20 December 2016

—W—

*Weeks v. the United Kingdom*, 2 March 1987, Series A no. 114  
*Winterwerp v. the Netherlands*, 24 October 1979, Series A no. 33

—Y—

*Yuksekdag Senoglu and Others v. Türkiye*, nos. 14332/17 and others, 8 November 2022  
*Yunusova and Yunusov v. Azerbaijan (no. 2)*, no. 68817/14, 16 July 2020